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개선 용역**

**최종보고서**

**2018.12.27.**

**제주특별자치도**



#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개선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 참여자 명단

- 책임연구원 : 김길훈(경영학박사, 공인회계사)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교수
  
- 연구원 : 고성호(경영학박사)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강사

# 목 차

## I. 과업의 개요

1.1 배경 및 목적 .....	3
1.2 과업의 내용 .....	4

## II. 육상풍력 이익공유화 약정서 분석 및 개선

2.1 이익공유화 약정서 내용 및 이익공유액 산정 .....	9
2.2 이익공유화 약정서 개선 방안 .....	15
2.3 이익공유화 약정서 이행담보 방안 .....	45

## III. 해상풍력 이익공유화 방안

3.1 발전기금 출연 약정서 검토 .....	55
3.2 해상풍력 이익공유화 방안 .....	62
3.3 이익공유화 방안의 구체적 기준과 영향 분석 .....	70

## IV. 이익공유화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방안

4.1 이익공유화 업무 프로세스 .....	83
4.2 이익공유액 산정 과정 .....	83
4.3 이익공유액 산정 검토보고서 .....	83
4.4 이익공유화 시스템 구축 .....	83

부록 .....	85
----------	----

## 표 목차

<표 2-1> 주요 이익공유화 약정서 비교분석 .....	9
<표 2-2> 표준 추정 손익계산서 .....	10
<표 2-3> 2017년 표준 추정 손익계산서 .....	11
<표 2-4> 지구별 수익성 차이에 따른 기부금 차이 비교 .....	12
<표 2-5> 평균 수익과 평균 비용의 산출을 위한 표준 손익계산서 .....	13
<표 2-6> 2017년 지구별 기부금 산정 .....	14
<표 2-7> 가시리·김녕 지구와 수망 지구의 이익공유화 약정서 비교 .....	17
<표 2-8> 평균 수익과 평균 비용의 산출을 위한 표준 손익계산서 비교 .....	20
<표 2-9> 가시리·김녕 지구와 동북 지구의 이익공유화 약정서 비교분석 .....	24
<표 2-10>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부금 산정 사례 .....	28
<표 2-11> 표준 손익계산서 작성 .....	31
<표 2-12> A사의 재무성과와 투자수익률 분석 .....	37
<표 3-1> 이익공유화에 따른 재무비율 변화 분석 .....	70
<표 3-2> 자금흐름 분석(납입자본 만큼 차입한 경우) .....	75
<표 3-3> 자금흐름 분석(차입금이 납입자본의 4배인 경우) .....	76
<표 3-4> 차입원금 상환 전·후 자금흐름 분석(납입자본 만큼 차입한 경우) ..	78



# I. 과업의 개요

1.1 배경 및 목적	3
1.2 과업의 내용	4





## I. 과업의 개요

### 1.1 배경 및 목적

-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및 개발이익의 도민 공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304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및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 사업자는 개발이익의 공유화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14년 4월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공유화 방안(부록 2)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제주도와 발전사업자들 간에 풍력발전사업에 관한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부록 3)를 체결하고, 발전사업자들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표준 당기순이익의 17.5%에 상당하는 표준 매출액 비율을 해당 발전사업자의 매출액에 곱한 금액)을 기부 받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약정서상 이익공유의 내용 중 정산방식의 복잡, 발전사업자 간 기부금 약정내용 상이, 이익공유 내용의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 등이 있어 풍력자원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 내용을 검토 및 개선하고 관련 내용을 매뉴얼화 함으로써, 참여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풍력발전사업자의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효율적 적립 및 기금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함

## 1.2 과업의 내용

### 1.2.1 주요 과업 내용

- 현행 약정서상 이익공유 주요 내용 점검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2014. 4.) 개선
-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참여업체 의견 수렴
- 해상풍력발전지구 적용 방안
- 이익공유화 매뉴얼 작성
- 그 밖에 약정서 표준화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

### 1.2.2 세부 과업 내용

#### 가. 현행 약정서상 이익공유 주요 내용 점검

- 3년간 이익공유화 조정금액 확정 및 개선방안 검토
  - 제주김녕풍력의 요청 사항(당기순손실 포함 누적 정산) 등 이익공유화 금액 산정 관련 사례 검토
  - 3년간 이익공유화 금액 조정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및 금액 확정
  - 매출액기준 환산율 산정 방법 개선방안 검토
- 이익공유화 약정서 검토 및 수정
  - 발전사업자별 이익공유화 약정서 비교 분석
    - 이익공유화 약정 내용의 차이점 요약 및 비교 분석
    - 이익공유화 약정 내용의 차이 원인 분석
  - 육상풍력 이익공유화 약정서 개정 필요성 검토
    - 상명풍력발전 등과 타 이익공유화 약정서와의 차이 조정방안
  - 약정서 표준화 방안 마련 검토
    - 발전사업자 간에 보편·타당하게 적용 가능한 방안
- 이익공유 이행보증보험계약 가입 실효성 검토 및 대안

- 약정서상 용어의 명확한 정의
  - 매출액,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표준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 등

**나.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2014. 4.) 개선**

- 당초 계획 이후 풍력발전 수익률 변화추이 반영 검토
  - 발전사업자별 기부금 산출기준인 표준손익계산서 검토
- 이익공유화 계획의 지속적인 이행 담보 방안

**다. 풍력발전 개발이익 참여업체 의견 수렴**

- 약정서 체결 후 실제 적용시 문제점 등 반영

**라. 해상풍력발전지구 적용 방안**

- 해상풍력 이익공유화 약정서(안)
  - 발전규모, 수익률 등을 고려한 적정 방안

**마. 이익공유화 매뉴얼 작성**

- 이익공유화 업무 매뉴얼
  - 이익공유화 담당업무 프로세스 및 유의 사항
- 이익공유액 산정 매뉴얼
  - 풍력발전회사 담당자가 이익공유액 산정 자료 작성과 금액 산정시 유의사항
- 이익공유액 산정 검토 매뉴얼
  - 공인회계사 등이 이익공유화 금액 산정의 적정성 검토시 유의사항

**바. 그 밖에 약정서 표준화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



## II. 육상풍력 이익공유화 약정서 분석 및 개선

2.1 이익공유화 약정서 내용 및 이익공유액 산정	9
2.2 이익공유화 약정서 개선 방안	15
2.3 이익공유화 약정서 이행담보 방안	45



## Ⅱ. 육상풍력 이익공유화 약정서 분석 및 개선

### 2.1 이익공유화 약정서 내용 및 이익공유액 산정

#### 2.1.1 이익공유화 약정서 내용

- 2013년 3월에 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운영 중인 육상풍력발전지구의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 2-1>과 같음

<표 2-1> 주요 이익공유화 약정서 비교분석

구분	가시리·김녕 지구	상명 지구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기부금 = 매출액 × 7%</li> <li>• 확정기부금 = 매출액 × X</li> <li>* 7% 대신 매출액기준 환산율 (X)로 조정하여 확정(3년 주기) 표준 매출액 × X(환산율)</li> <li>= 표준 당기순이익 × 17.5%</li> <li>* 표준 매출액: 기간 조정 한 매출액</li> <li>* 표준 당기순이익: 표준 매출액과 일부 비용은 표준비용 적용</li> <li>* 표준 매출액, 표준 당기순이익: 3개 풍력지구 평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 = 매출액 × 7%</li> </ul>
기부금 면제	<p>해당 지구의 발전 사업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p> <p>* 사업부 형태인 가시리의 경우 부문 손익계산서로 판단</p>	<p>상명 지구 부문의 당기순이익이 매출액의 7% 이하인 경우</p>

- 상명 지구의 경우는 해당연도 매출액에 7%를 곱하여 기부함
- 이에 비해, 가시리와 김녕 지구는 해당연도 매출액에 7%를 곱한 금액을 먼저 기부한 후, 3년 주기로 하여 7% 대신 매출액기준 환산율로 조정하여 기부금을 최종적으로 확정함



- 이것은 매출액 비율을 7%로 고정할 경우에는 이후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하락한 때에는 낮은 수익성에 비해 과도한 기부금을 부담하므로, 향후 수익성 변동에 따라 매출액에 적용하는 비율을 조정하자는 사업자 측의 요청을 제주도가 수용한 것임
  - 향후 수익성이 하락한 경우 → 7%보다 낮은 비율을 매출액에 적용
  - 향후 수익성이 상승한 경우 → 7%보다 높은 비율을 매출액에 적용
  
- 이에 따라 매출액 비율 7%를 산정할 때 이용한 표준 추정 손익계산서(제주특별자치도, 2014년, p.26 <표 2-11>. 아래 <표 2-2>에 2021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나타나 있음)에서, 매출액과 주요 비용(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은 실제 발생한 금액을 적용하고, 개발이익 공유화에 따라 제주도에 기부하는 금액은 비용 항목을 추가하여 다음연도의 비용에 산입하며, 인건비·지급임차료·순이자비용·기타 비용은 연도별 표준 추정 손익계산서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표준 당기순이익을 산정하고(아래 <표 2-3>에 2017년 표준손익계산서 작성 방법이 나타나 있음), 표준 당기순이익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액기준으로 환산하기 위한 일정율(매출액기준 환산율)을 매년 산정하여 해당연도 개발사업자의 매출액에 곱하여 기부할 금액을 최종 확정하는 것임

<표 2-2> 표준 추정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 출 액	18,171	18,524	18,960	16,795	17,428	18,053	18,712
감가상각비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유지보수비	1,244	1,281	1,319	1,359	1,400	1,844	1,899
인건비	600	630	662	695	730	767	805
지급임차료	600	600	600	600	600	600	600
순이자비용	3,739	3,205	2,720	2,245	1,774	1,432	1,176
기타	250	250	250	250	250	250	250
세전순이익	7,738	8,558	9,409	7,646	8,674	9,160	9,982
법인세비용	1,702	1,883	2,070	1,682	1,908	2,015	2,196
당기순이익	6,036	6,675	7,339	5,964	6,766	7,145	7,786

&lt;표 2-3&gt; 2017년 표준 손익계산서 작성 방법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표준 손익계산서
	가시리 지구	김녕 지구	상명 지구	
매 출 액	실제 반영	실제 반영	실제 반영	중앙값
감가상각비	실제 반영	실제 반영	실제 반영	중앙값
유지보수비 <sup>1)</sup>	실제 반영	실제 반영	실제 반영	중앙값
인건비	662	662	662	662
지급임차료	600	600	600	600
순이자비용	2,720	2,720	2,720	2,720
기부금	전연도 금액	전연도 금액	전연도 금액	중앙값
기타	250	250	250	250
세전순이익				
법인세비용 <sup>2)</sup>				
당기순이익				

- 1) 유지보수비: 풍력발전지구에 위치한 발전설비 및 해당 전력계통연계 시설의 유지보수비(해당 설비와 시설에 대한 수익적 지출액)가 해당됨  
 2) 법인세비용: 세전순이익 × 세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세법상의 세율

· 기부금 = 해당 발전사업자의 당기 매출액 × X(매출액기준 환산율)

· 표준 매출액 × X(매출액기준 환산율) = 표준 당기순이익 × 17.5%

$$X = \frac{\text{표준 당기순이익} \times 17.5\%}{\text{표준 매출액}}$$

· 매출액기준 환산율(X)은 수익성(표준 당기순이익/표준 매출액)이 높을수록 커지고, 수익성이 낮을수록 작아짐

- 풍력발전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주 요인은 매출액이므로 <표 2-4>와 같이 매출액 × X(매출액기준 환산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풍력지구별 수익성 차이가 기부금 차이에 반영됨

<표 2-4> 지구별 수익성 차이에 따른 기부금 차이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A 지구	B 지구	차이(차이율)
매 출 액(A)	13,000	11,000	2,000(16.7%)
비 용(B)	9,000	9,000	
당기순이익(C=A-B)	4,000	2,000	2,000(66.7%)
매출액비율(D)	3%		
기 부 금(E=A×D)	390	330	60(16.7%)

○ 기부금 면제

- 가시리와 김녕 지구는 해당 지구의 발전 사업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연도의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함\*

\* 사업부 형태인 가시리 지구의 경우 해당 풍력발전사업 부문의 손익 계산서로 판단함[사업 부문별 손익 산정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2014), p.31(본 보고서 부록 p.102) 참조]

- 상명 지구는 상명풍력발전사업 부문의 당기순이익이 매출액의 7% 이하인 경우 해당연도의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함(부문 당기순이익 < 부문 매출액×7%)

\* 상명 지구의 기부금 면제 기준은 다소 특별하여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기부금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음

2.1.2 이익공유액 산정

- <표 2-5>에는 2017년도 3개 풍력발전지구의 재무자료와 표준 매출액과 표준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음

- <표 2-5>에서 2017년 각 풍력지구의 매출액,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기부금 금액만 별도로 집계하여 각각의 중앙값을 기재하면 표준 손익 계산서가 완성됨

&lt;표 2-5&gt; 평균 수익과 평균 비용의 산출을 위한 표준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표준 손익계산서
	A 지구	B 지구	상명 지구	
매 출 액	13,120	11,677	9,889	11,677
감가상각비	3,905	3,770	4,161	3,905
유지보수비	1,110	935	130	935
인건비	662	662	662	662
지급임차료	600	600	600	600
순이자비용	2,720	2,720	2,720	2,720
기부금	380	375	0	375
기타	250	250	250	250
세전순이익	3,493	2,365	1,366	2,230
법인세비용	746	498	279	469
당기순이익	2,746	1,867	1,087	1,762

※ 본 사례의 최종 확정금액은 향후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이하 본 보고서에서 설명하는 기부금 산정금액도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향후 달라질 수 있음

- 세전순이익 = 매출액 - (감가상각비 + 유지보수비 + 인건비 + 지급임차료 + 순이자비용 + 기부금 + 기타)
- 법인세비용 = 세전순이익 × 세율
- 당기순이익 = 세전순이익 - 법인세비용

○ 2017년의 경우 <표 2-5>의 표준 손익계산서에서 표준 매출액과 표준 당기순이익은 각각 11,677백만원과 1,762백만원이므로 A 지구와 B 지구 각각의 실제 매출액(<표 2-5>의 매출액은 비정상적인 고장 등의 기간이 조정된 매출액임)에 적용될 매출액 환산율은 2.7%임

표준 매출액 ×  $x$  = 표준 당기순이익 × 17.5%

$$x = \frac{\text{표준 당기순이익} \times 17.5\%}{\text{표준 매출액}} = \frac{1,762 \times 17.5\%}{11,677} = 2.7\%$$

$\frac{\text{표준 당기순이익}}{\text{표준 매출액}}$  : 제주육상풍력발전사업의 평균 수익성(매출액순이익률) 반영

- <표 2-5>에 따른 2017년 3개 풍력발전지구의 기부금 산정 결과가 <표 2-6>에 나타나 있음

<표 2-6> 2017년 지구별 기부금 산정

(단위: 백만원)

구 분	A 지구	B 지구	C 지구
매 출 액(A)	13,120	11,101	6,922
비 율(B)	7%		-
선기부금(C=A×B)	918	777	-
확정 비율(D)	2.7%		7%
확정기부금(E=A×D)	354	300	485

- 2017년의 경우 SMP(계통한계가격)가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 체결 시 예상했던 것보다 하락하고 제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대한 차별적 거래시스템으로 인하여 제주 REC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제주풍력발전 사업의 수익성이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A와 B 지구에 적용할 매출액기준 환산율은 상명 지구의 매출액 비율 7%보다 낮은 2.7% 수준임
- A 지구와 B 지구의 2017년 매출액은 각각 13,120백만원과 11,101백만원 이고, 해당 매출액에 매출액기준 환산율 2.7%를 곱하면 각각 354백만원과 300백만원의 기부금이 확정됨
  - 2017년이 3년 정산주기의 마지막 연도가 아닐 경우에는 A 지구와 B 지구는 각각 예비기부금 918백만원과 777백만원을 다음연도인 2018년 6월까지 기부하고, 3년 주기 마지막 연도의 다음연도에 각각의 예비기부금과 확정기부금의 차액을 정산함
- 상명 지구의 경우는 매출액 비율이 7%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2017년 매출액 6,922백만원에 7%를 곱하면 485백만원의 기부금이 확정됨

## 2.2 이익공유화 약정서 개선 방안

### 2.2.1 이익공유액 산정방법의 통일

#### 가. 가시리·김녕 지구와 상명 지구

- 이익공유액 산정방법이 육상풍력발전지구 간에 달라서 통일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표 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익공유액 산정 시 매출액에 곱하는 비율은 상명 지구의 경우 7%로 고정되어 있으나, 가시리 지구와 김녕 지구의 경우는 육상풍력발전사업의 수익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매년 조정하고 있음

$$\text{표준 매출액} \times X = \text{표준 당기순이익} \times 17.5\%$$

$$X = \frac{\text{표준 당기순이익} \times 17.5\%}{\text{표준 매출액}}$$

$\frac{\text{표준 당기순이익}}{\text{표준 매출액}}$  : 제주육상풍력발전사업의 평균 수익성 반영

- 매출액에 매출액기준 환산율( $X$ )을 곱하여 이익공유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매출액  $\times X$ )은 이익공유 방안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는 **당기순이익기준**과는 다름
- 당기순이익기준은 풍력발전사업의 부채조달 규모와 비용의 상이함으로 인해 주주의 몫인 당기순이익이 달라지므로 이익공유의 사업자 간 형평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음(제주특별자치도, 2014)
- **매출액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하며 간단하여 **적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매출액이 약정서를 체결할 때의 예상과 크게 다를 경우 사전에 정한 일정율의 적용은 무리가 있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2014)에서는 이익공유 방법으로 **매출액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매출액 비율을 고정하지 않고 매출액에 적용하는 비율(매출액기준 환산율)을 매년 육상풍력발전사업의 수익성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함

$$A\text{사의 이익공유액} = A\text{사의 매출액} \times X(\text{매출액기준 환산율})$$

$$\text{육상풍력의 표준 매출액} \times X = \text{육상풍력의 표준 당기순이익} \times 17.5\%$$

$$X = \frac{\text{표준 당기순이익} \times 17.5\%}{\text{표준 매출액}}$$

$$\frac{\text{표준 당기순이익}}{\text{표준 매출액}} : \text{제주육상풍력발전사업의 평균 수익성(매출액순이익률)}$$

- <표 2-6>을 보면, 2017년의 경우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 체결 당시에 예상했던 것보다 SMP 등이 크게 하락하여 풍력발전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져서 매출액기준 환산율은 7%보다 상당히 낮은 2.7% 수준임
- 차입금 약정이 있는 풍력발전회사의 경우 현재의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를 매출액에 일정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채권단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상명 지구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2014)에서 검토된 이익공유 방안 중 **매출액기준과 초과이익 기준**이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익공유액 = 매출액 × 7%로 하되, 상명풍력발전의 당기순이익이 매출액 × 7%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함
  - 이것은 다시 말해 당기순이익이 매출액 × 7%를 초과할 경우에만 매출액 × 7%를 이익공유액으로 한다는 것으로, 당기순이익이 매출액 × 7%를 초과하여 수익성이 높을 때에는 이익공유를 할 수 있으나 당기순이익이 매출액 × 7% 이하로 수익성이 낮을 때에는 이익공유를 하

지 않는다는 것임

\* 엄밀한 의미에서 초과이익 기준은 (당기순이익 - 매출액 × 7%) × α 임

○ 상명 지구의 이익공유 방안은 다소 특별한 이익공유 방안이고, 향후에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당기순이익이 매출액 × 7% 이하가 되어 기부금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의 통일화 차원에서 상명 지구의 이익 공유화 약정서를 제주특별자치도(2014)에서도 제시되어 있고 가시리 지구와 김녕 지구에서 채택한 매출액기준 환산율 적용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나. 가시리·김녕 지구와 수망 지구

○ 가시리·김녕 지구와 수망 지구의 이익공유화 약정서를 비교하면 <표 2-7>과 같음

<표 2-7> 가시리·김녕 지구와 수망 지구의 이익공유화 약정서 비교

구분	가시리·김녕 지구	수망 지구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기부금 = 매출액 × 7%</li> <li>· 확정기부금 = 매출액 × X</li> <li>* 7% 대신 매출액기준 환산율 (X)로 조정하여 확정(3년 주기)</li> <li>표준 매출액 × X(환산율)</li> <li>= 표준 당기순이익 × 17.5%</li> <li>○ 표준 매출액, 표준 당기순이익: 3개 지구* 평균</li> <li>* 가시리·김녕·상명 지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기부금 = 수망 지구 표준 당기순이익 × 17.5%</li> <li>· 확정기부금 = 매출액 × X</li> <li>* 매출액기준 환산율(X)로 조정하여 확정(조정 주기 언급 없음)</li> <li>표준 매출액 × X(환산율)</li> <li>= 표준 당기순이익 × 17.5%</li> <li>○ 표준 매출액, 표준 당기순이익: 3개 지구* 평균</li> <li>* 가시리·김녕·상명 지구</li> <li>· 추가기부금: 20년간 100억원</li> <li>* 사업연도별 기부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li> </ul>



기부금 면제	해당 지구의 발전 사업에서 <b>당기순손실</b> 이 발생한 경우 * 사업부 형태인 가시리의 경우 부문 손익계산서로 판단	수망풍력발전사업에서 <b>당기순손실</b> 이 발생한 때(추가기부금 포함)
표준 손익계산서 회계연도	연도 기준(2015년, 2016년, ...)	차수 기준(1차연도, 2차연도, ...)
사업개시 연도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최초 3개 연도는 매년 2억씩 기부하고, 그 후 2년간 균등액 정산하는바, <b>각 1년씩 순연함</b>	최초 사업연도 <b>기부금 없음</b>

○ 가시리·김녕 지구와 달리 수망 지구의 경우에는 매출액 × 7%가 아닌 수망 지구 표준 당기순이익 × 17.5%를 회계연도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고 있음

- 매출액 × 7%는 육상풍력 이익공유화의 원칙인바, 통일화 차원에서도 수망 지구의 선기부금 약정을 매출액 × 7%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가시리·김녕 지구와 수망 지구는 이익공유액 산정에 있어서 동일하게 매출액기준 환산율을 적용함

-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같이 공모했지만 2013년 3월에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지 못하고 2015년 7월에 지구지정을 받은 수망 지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임대주택사업을 목적으로 20년간 100억원의 추가적인 기부금을 약정함

○ 제주특별자치도(2014)에서는 다음과 같이 당시에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지 못한 수망 지구를 제외한 가시리 풍력발전지구, 김녕 풍력발전지구, 상명 풍력발전지구, 어음 풍력발전지구\* 등 4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여 매출액기준 환산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 평균 수익과 비용의 적용

○ 가시리 풍력발전지구, 김녕 풍력발전지구, 상명 풍력발전지구, 어음 풍력

발전지구 중 육상풍력발전 사업을 개시한 각 발전사업자의 해당연도 매출액 합계액과 발생비용 합계액(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기부금 각각으로 구분)에 해당 사업자 수를 나눈 평균 매출액과 평균 발생비용 각각을 아래 <표 2-12> 평균 수익과 평균 비용의 산출을 위한 표준 손익계산서의 해당 연도 매출액,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용으로 추가 인정되는 기부금으로 함(제주특별자치도, 2014, pp.29-30)

\* 어음풍력발전지구는 2013년 3월에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았지만 2016년 10월에 허가가 취소됨

- 수망육상풍력발전사업에 관한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의 <첨부 2>에는 제주특별자치도(2014)의 ‘<표 2-12> 평균 수익과 평균 비용의 산출을 위한 표준 손익계산서’(30MW기준)를 21MW(수망 지구의 설비용량) 기준으로 환산한 표를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연도별 표준당기순이익을 산출한다고 되어 있음

- 환산율은 위와 같이 산출된 표준당기순이익에 17.5%를 곱한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구한다고 되어 있음

$$\text{환산율}(x) = \text{표준당기순이익} \times 17.5\% \div \text{평균매출액}$$

- 또한, 표준 손익계산서의 항목별 구체적 기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2014)의 각 발전사업자\*의 해당연도 매출액(설비용량 각 30MW 기준) 합계액 등을 해당 사업자 수로 나눈 평균매출액 등을 21MW(수망 지구의 설비용량)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출된 금액 각각을 평균 수익과 평균 비용의 산출을 위한 표준 손익계산서의 해당 연도 매출액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 가시리·김녕·상명·어음 풍력발전지구

- 이에 따르면 (주)수망풍력의 매출액 등은 해당연도 매출액 합계 등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주)수망풍력의 매출액기준 환산율 산정에 있어 (주)수망풍력의 수익과 비용은 평균 수익과 평균 비용의 산출을 위한 표준 손익계산서에 포함이 되지 않음 ⇒ 가시리·김녕·상명 지구의 수익과

비용으로 수망 지구의 매출액기준 환산율을 산정함

- <표 2-8>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2014)에서는 2015년, 2016년 등으로 표준 손익계산서의 회계연도를 구분하였는데 반해 (주)수망풍력의 이익공유화 약정서에는 1차 사업연도, 2차 사업연도로 회계연도를 구분함

<표 2-8> 평균 수익과 평균 비용의 산출을 위한 표준 손익계산서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주특별자치도(2014)			(주)수망풍력		
	2015년	2016년	...	1차 사업연도	2차 사업연도	...
매 출 액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인건비	600	630	...	420	441	...
지급임차료	600	600	...	420	420	...
순이자비용	3,739	3,205	...	2,617	2,244	...
기부금	0					
기타	250	250	...	175	175	...
세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 제주특별자치도(2014)와 (주)수망풍력의 금액 차이는 제주특별자치도(2014)는 30MW 기준이고 (주)수망풍력은 21MW 기준으로 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2014) 금액에 21÷30을 곱한 금액을 기재했기 때문임

-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2014)와 같이 연도기준의 회계연도를 적용할 경우 사업개시연도부터 2024년까지의 순이자비용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예를 들어 수망 지구의 사업개시연도가 2019년일 경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순이자비용이 비용으로 인정됨) 1차 사업연도, 2차 사업연도 등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함으로써 사업개시연도부터 10년에 걸쳐 순이자비용을 전액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차수 기준의 사업연도로 할 경우 순이자비용의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매출액기

준 환산율이 낮아져 연도기준의 회계연도보다 **기부금이 감소함**

- 또한, (주)수망풍력의 이익공유화 약정서에는 인건비 등 <표 2-8>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기재된 비용의 기준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2014)에 기재된 인건비, 순이자비용, 기타항목은 2015년도를 사업개시 1차 연도로 상정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 이것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5% 씩 증가하는 것으로 기재된 인건비를 사업개시 연도에 맞춰 추가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차수 기준의 사업연도로 할 경우 매출액기준 환산율이 낮아져 연도기준의 회계연도보다 **이익공유액이 감소함**

○ 1차 사업연도, 2차 사업연도 등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하는 현재의 수망 지구의 이익공유화 약정서 구조를 유지할 때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수망 지구의 매출액기준 환산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수망 지구를 제외하고 가시리·김녕·상명 지구의 수익과 비용을 이용할지 또는 수망 지구의 수익과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할지 여부

⇒ (주)수망풍력만 4개 지구의 매출액과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기부금을 반영하여 매출액기준 환산율을 산정할 경우 그 **실익이 크지 않고**(매출액기준 환산율을 정하는 것은 4개 지구의 평균 수익과 평균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여 반영하려는 것보다는 **연도별 수익성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려는 취지이므로 3개 지구의 평균으로 계속 적용하면 충분히 그 목적이 충족됨**), **오히려 복잡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매출액기준 산정방법이 수망 지구와 나머지 3개 지구가 일부 다르고, 매출액기준 환산율도 다름)할 수 있음

따라서 현행 약정서를 유지하여 **수망 지구의 매출액기준 환산율은 가시리·김녕·상명 지구의 수익과 비용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수망 지구도 포함하여 매출액기준 환산율을 산정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기존 다른 3개 지구의 동의 및 동일한 매출액기준 환산율의 적용(1차 사업연도, 2차 사업연도 등으로 회계연도를 구분)이 아니라 2015년, 2016년 등으로 표준 손익계산서의 회계연도를 구분) 임

- 가시리·김녕·상명 지구에 적용되는 제주특별자치도(2014)의 매출액기준 환산율 산정방법을 개정할 경우 수망 지구의 이익공유화 약정서상의 매출액기준 환산율 산정방법도 개정할지 여부

⇒ 수망 지구에 적용할 매출액기준 환산율을 산정하기 위해 가시리·김녕·상명 지구의 발전사업자에 별도의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산정과정의 복잡해지므로 **수망 지구의 이익공유화 약정서상의 매출액기준 환산율 산정방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으로는 이익공유화 약정서 통일화 차원에서 수망 지구도 가시리·김녕·상명 지구와 마찬가지로 2015년, 2016년 등으로 표준 손익계산서의 회계연도를 구분하여 통일적인 매출액기준 환산율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주)수망풍력은 순이자비용 등의 과소 인정으로 인한 이익공유액 증가와 이익공유화 약정서 개정에 대한 대주단의 불수용 등의 이유로 이러한 이익공유화 약정서의 통일화에 부정적임

- 수망 지구도 가시리·김녕·상명 지구와 마찬가지로 2015년, 2016년 등으로 표준 손익계산서의 회계연도를 구분할 경우 기부금 증가 예상액은 2019년 말 기준으로 19억원 정도임

\* 19억원의 현재가치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자본비용이 5% 또는 6%일 때 15억원 정도임

- 이익공유화 약정서를 통일함에 따른 순이자비용 등의 과소 인정으로 인한 수망 지구의 기부금 증가의 문제는 추가기부금 100억원의 조정

을 통해 해결이 가능함

- \* 자본비용이 각각 5%와 6%일 때 20년간 5억원씩 총 100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의 현재가치는 각각 62억원과 57억원임

**변경(안):** 수망 지구도 가시리·김녕·상명 지구와 마찬가지로 2015년, 2016년 등으로 표준 손익계산서의 회계연도를 구분하고, **추가기부금을 100억원이 아닌 60억원**으로 하며, 분할하여 기부하는 기간도 20년이 아닌 **12년으로 하여 매년 5억원씩 기부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이렇게 변경할 경우, 2019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주)수망풍력이 내게 될 기부금의 현재가치(자본비용 6% 가정)의 변동은 없어 현재의 약정서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음

- 수망 지구는 발전용량이 당초 21MW에서 25.2MW로 변경되었는바, 풍력 발전심의위는 설비 용량 증설에 따라 **이익공유화 확대 계획 제출을 부대조건으로 의결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주)수망풍력은 수망 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당기순이익 전액을 제주도에 기부한다는 추가 이익공유화 계획을 제출하고, 이의 내용을 개발이익 공유와 약정서에 추가 기재하고 변경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함
- 수망 지구의 발전용량이 당초 21MW에서 25.2MW로 변경되었는바, 수망 육상풍력발전사업에 관한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에서 21MW를 25.2MW로 수정하고, 수익과 비용의 환산과 관련된 표 등도 21MW 기준에서 25.2MW 기준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이 추가 이익공유화 계획 및 용량 변경에 따른 내용 수정뿐만 아니라 약정서 통일을 위한 개정도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약정서가 변경되어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재무적 자료를 (주)수망풍력의 대주단에 제공하여 약정서 변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다. 가시리·김녕 지구와 동북 지구

- 가시리·김녕 지구와 동북 지구(제주에너지공사)의 이익공유화 약정서를 비교하면 <표 2-9>와 같음

<표 2-9> 가시리·김녕 지구와 동북 지구의 이익공유화 약정서 비교분석

구분	가시리·김녕 지구	동북 지구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기부금 = 매출액 × 7%</li> <li>• 확정기부금 = 매출액 × X 표준 매출액 × X(환산율) = 표준 당기순이익 × 17.5%</li> </ul> <p>○ 표준 매출액, 표준 당기순이익: 3개 지구* 평균 * 가시리·김녕·상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기부금 = 매출액 × 7%</li> <li>• 확정기부금 = 매출액 × X 표준 매출액 × X(환산율) = 표준 당기순이익 × 20%</li> </ul> <p>○ 표준 매출액, 표준 당기순이익: 동북 지구를 제외한 3개 지구* 평균으로 해석됨 * 가시리·김녕·상명·어음</p> <p>단, 이익배당을 한 경우 이익공유액과 비교하여 조정할 수 있음</p>
이익공유 면제	<p>해당 지구의 발전 사업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p> <p>* 사업부 형태인 가시리 지구의 경우 부문 손익계산서로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 지구 부문 손익 산정 결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li> <li>• 배당금이 매출액 × X(매출액 환산율)를 초과하는 경우</li> </ul>
기부금의 사용	<p>기부금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재원임</p>	<p>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 따른 기부금과 배당금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재원임</p>

- 제주에너지공사의 배당금은 풍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인한 이익도 포함되어 결정되는 바, 제주에너지공사의 배당금 전체를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것은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목적과 주요 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용도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될 수 있음**
  - 정관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의 주요 사업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석유·가스·석탄 등의 생산, 수송, 분배, 판매와 집단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 등임
  -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의 용도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 재생에너지 교육 및 홍보 지원 사업,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기부자가 지정하는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임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에 따라, 도의 100% 출자법인인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에 따른 배당금 전체가 제주도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됨
- 제주에너지공사의 배당금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재원으로 할 경우에는 동북풍력발전사업 등 풍력자원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를 별도로 체결할 필요가 없음
  - 제주에너지공사의 배당금은 주주인 제주도가 결정하는 것이고 풍력자원 개발이익은 전액 제주에너지공사의 이익에 포함되어 있음
  - 즉, 풍력자원 개발이익 공유화는 제주도나 제주도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 이외의 자가 풍력발전회사의 주주일 때 필요한 것임
- 제주에너지공사의 배당금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제5조 제4항을 삭제할 경우



에는 현재와 같이 풍력자원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를 체결하되, **배당금과 비교하여 조정한다는 내용(동북풍력발전사업에 관한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 제4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일부)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제주도가 제주에너지공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주주인 상황에서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도에 이익공유액을 기부한다는 것은 상법상 맞지 않음**
  - 개발이익을 포함하여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것이지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할 수는 없음
  - 따라서 현재의 약정서와 같이 주주인 제주도에 기부한다는 내용과 기부와 관련된 제반 내용의 삭제가 필요함
  - 대신에 약정서에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자원 개발이익은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에 출연한다고 하고, 출연할 금액의 산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제주에너지공사는 공유화기금에 출연할 금액의 산정기준 이상의 금액을 배당가능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주도에 배당을 하고, 제주도는 배당금 중 공유화기금에 출연할 금액의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유화기금에 출연한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음

## 2.2.2 3년간의 이익공유액 정산과정 검토

### 가.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A사의 경우 사업 첫해인 2015년에 사업개시 지연으로 인해 대규모의 당기순손실 발생하여 2017년 말에 결손금이 있는 상태인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기간을 통산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2016년과 2017년에 대해서도 기부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임

- A사의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에 따르면 ‘A사가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연도의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 당기순이익은 특정 회계기간의 재무성과를 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한 값이며, 당기순이익은 주주의 입장에서(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은 해당 회계기간의 재무성과 중 주주의 몫이 증가한 금액을 측정한 것임) 특정 회계기간의 재무성과 등을 분석하고 향후 주식의 가치 등을 평가하는 데 이용되는 중요한 재무정보임
  -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에 따르면 개발이익의 산정은 1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연도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매출액에 매출액기준 환산율을 적용하여 기부하는 것임
  -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에서는 해당연도 개발이익을 표준 당기순이익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특정회사의 전연도 재무성과(당기순손실)가 그 이후 연도의 개발이익을 측정하는 표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표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매출액기준 환산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기부할 금액(매출액 × 매출액기준 환산율)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연도의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취지는 표준 당기순이익(육상풍력발전지구 재무성과의 평균에 의해 산출)이 발생한 연도에도 특정 지구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연도의 해당 지구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경우에는 이익공유화의 방식인 기부금이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것임
  - 따라서 A지구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A지구 해당 연도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그 이후 연도에 A지구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익공유액을 기부하는 것임
  - 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사례는 <표 2-10>과 같음

<표 2-10>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부금 산정 사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A사	B사	평균(표준)	A사	B사	평균(표준)
매 출 액	7,600	14,000	10,800	12,000	13,600	12,800
비 용	9,000	10,000	9,500	11,000	10,200	10,600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	(1,400)	4,000	1,300	1,000	3,400	2,200
환 산 율			2.1%*			3.0%
매출액×환산율	160	294		360	408	
기 부 금	0	294		360	408	

\* 10,800(표준 매출액) × 2.1% = 1,300(표준 당기순이익) × 17.5%

- 이 사례에서 2015년의 경우 A사의 기부금 산정액(2015년 매출액×매출액기준 환산율)은 160백만원이지만, 2015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함
  - 2016년의 경우 A사는 360백만원(2016년 매출액×매출액기준 환산율)을 이익공유화 목적으로 제주도에 기부하는 것임
  - 이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사가 2015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해당 연도의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결정에 근거자료이고 당기순손실 금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더욱이 2015년 당기순손실 금액이 2016년 기부금 산정액(2016년 매출액×매출액기준 환산율)이나 2016년의 기부금 면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
- A사의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서에 기술되어 있어야 함

-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때(3개 지구의 평균인 표준 당기순이익 발생한 때에도 특정 지구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는 해당 연도의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2015년에는 A사의 기부금(A사의 2015년 매출액 × 2015년 매출액기준 환산율)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 그러나 <표 2-10>의 사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사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당기순이익 발생하였으므로 A사의 2016년 이익공유액(A사의 2016년 매출액 × 2016년 매출액기준 환산율)과 2017년 이익공유액(A사의 2017년 매출액 × 2017년 매출액기준 환산율)은 제주도에 기부하는 것이 타당함

#### 나. 보험료와 송전선로이용료가 유지보수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2014)에 따르면, 매출액에 적용하는 비율을 7%로 고정하지 않고 수익성 변동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매출액 비율 7%를 산정할 때 이용한 표준 추정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과 주요 비용(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은 실제 발생한 금액을 적용하고, 개발이익 공유화에 따른 기부금은 비용 항목을 추가하여 다음연도의 비용에 산입하며, 인건비·지급임차료·순이자비용·기타 비용은 연도별 표준 추정 손익계산서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표준 당기순이익을 산정함(<표 2-3> 참조)

#### ○ 약정서상 실제 발생비용 산정 방법

##### - 감가상각비

- 풍력발전지구에 위치한 발전설비 및 해당 전력계통연계 시설의 감가상각대상 금액에 대해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출함
- 본사의 간접비 배부액 등 풍력발전지구에 위치한 풍력발전 설비

및 해당 전력계통연계 시설의 취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액은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대상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위 사항 외에 수익적 지출 등 재무제표의 자산에 계상할 수 없어 감가상각대상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의 구분은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따름

- 유지보수비

- 풍력발전지구에 위치한 발전설비 및 해당 전력계통연계 시설의 **유지보수비**(해당 설비와 시설에 대한 수익적 지출액)가 해당되며, 그 발생기간의 귀속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름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대해 <표 2-3> 평균 수익과 평균 비용의 산출을 위한 표준 손익계산서의 작성 및 확인에 있어서 논란이 된 것은 **유지보수비에 해당되는 금액의 산정임**
- 표준 손익계산서 작성을 설명하는 <표 2-11>을 보면, 회사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특정 비용(A사 O&M비용 중 1,390백만원, B사 O&M비용 중 1,230백만원)이 **이익공유화 약정서에 정의된 유지보수비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표준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전액 인정되어 표준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므로 매출액기준 환산율을 낮추는 역할을 함**
  - 그러나 그 중 일부 비용(예: A사 O&M비용 중 보험료 110백만원, B사 O&M비용 중 보험료 90백만원)이 **이익공유화 약정서에 정의된 유지보수비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당해 일부 비용은 표준 손익계산서의 유지보수비로 인정되지 않아서(‘기타’ 등 정액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 표준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매출액기준 환산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 못함** ⇒ 표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비해 A사와 B사의 **기부금이 각각 증가함**(A사 기부금 = A사 매출액 × 매출액기준 환산율, B사 기부금 = B사 매출액 × 매출액기준 환산율)

&lt;표 2-11&gt; 표준 손익계산서 작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비고 (차액)
	유지보수비가 전액 인정되는 경우			유지보수비가 일부 인정되는 경우			
	A사	B사	평균 (표준)	A사	B사	평균 (표준)	
매 출 액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1,390	1,230	1,310	1,280	1,140	1,210	100
인건비	600	600	600	600	600	600	
지급임차료	600	600	600	600	600	600	
순이자비용	3,739	3,739	3,739	3,739	3,739	3,739	
기부금	0	0	0	0	0	0	
기타	250	250	250	250	250	250	
세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에 따른 유지보수비는 다음과 같음

풍력발전지구에 위치한 발전설비 및 해당 전력계통연계 시설의 유지보수비(해당 설비와 시설에 대한 수익적 지출액)가 해당됨

-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유지보수비: 시설의 상태를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하고 낡거나 부서진 것을 고치는데 들어간 금액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 유지: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함
- 보수: 건물이나 시설 따위의 낡거나 부서진 것을 손보아 고침

-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
  
  - The Crown Estate(2010)에서는 풍력발전사업 **운영 과정**을 **Operations & maintenance**로 칭하고(보통 **O&M**으로 약칭함),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A Guide to an Offshore Wind Farm)
    - O&M의 기능은 최적의 전력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풍력발전소의 전 운영기간에 지원(support)을 제공함
    - O&M의 구성요소(components)는 운영(operations)과 유지보수(maintenance)로 구분됨
      - **운영**의 기능: 풍력발전의 성과를 모니터하고, 유지보수 일정을 계획(plan)하며, 고객과 공급자(supplier)와의 관계를 관리(manage)함
      - **유지보수**의 기능: **일상적인 관찰, 서비스, 수리(또는 보수, 수선)**를 제공함  
Provide routine observation, service and repair
  
  - 유지보수 프로그램(Maintenance Program)은 일반적으로 3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비정기 유지보수, 정기 유지보수, CM(상태감시)시스템**으로 구분됨
    - 현재 진행 중인 정기유지보수가 있더라도 그 외 유지보수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데 추가 될 수 있는 유지보수의 영역은 다음과 같음
      - 오일교환    · 블레이드 점검    · 타워 토크 체크    · 적외선 검사
      - 볼트체결력 체크    · 진동 분석    · 장치의 개량    · 모니터링에 상태 점검
- [사내 풍력 유지보수 프로그램 확립(Establishing an In-House Wind Maintenance Program),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2012) p.195 와 p.200에서 재인용]

- ‘시설의 상태를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하고 낡거나 부서진 것을 고치는데 들어간 금액’으로 유지보수비를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유지관리를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으로 정의한 점, O&M의 구성요소를 운영(operations)과 유지보수(maintenance)로 구분하고 유지보수 프로그램(Maintenance Program)은 정기·비정기 유지보수 및 CM(상태감시)시스템으로 구분하는 실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 볼 때, 실제 발생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지보수 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비는 유지보수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유지보수비(maintenance)를 운영비(operations)와 구분하지 않고 유지보수 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비도 유지보수비에 포함시킬 경우, 인건비·임차료·수도광열비·통신비·보안비용·경비비용·송전요금 등 대부분의 영업비용이 유지보수비에 해당될 것이므로 영업비용 중 감가상각비와 유지보수비 만을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적용한다는 이익공유화 약정서상의 표준 손익계산서 작성의 기본원칙에 어긋남
- 풍력터빈 제조회사와 장기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전액 표준손익계산서의 유지보수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청구되는 유지보수비에는 재료비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포함되는데, 동 인건비를 따로 구분하기가 어렵고 표준 손익계산서에 정액으로 기재된 인건비(2015년의 경우 6억원)와는 구별되는 비용이라 할 수 있음
- 이밖에 풍력발전지구에 위치한 발전설비 및 해당 전력계통연계 시설에 대한 예방 및 정비 비용, 수선비, 소모품비, 청소용역비는 유지보수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일반기업회계기준

유형자산의 완성 후의 지출이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 등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예: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제10장 유형자산 10.14).

☞ 발생한 기간의 비용 ⇒ 수익적 지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일상적인 수선·유지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주로 노무비와 소모품비로 구성되며 사소한 부품원가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의 목적은 보통 유형자산의 ‘수선과 유지’로 설명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문단 12).

☞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 수익적 지출

(보험료)

○ 앞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보험료는 운영비(O&M Costs)에 해당되지만 운영비의 주요 구성요소인 유지보수비(Maintenance Costs)에는 포함되지 않음

\* 표준 손익계산서의 실제 발생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지보수 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비는 유지보수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바, 보험료는 유지보수 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비임

○ 화재 등에 대비한 풍력터빈 등의 시설에 대한 보험료는 표준 손익계산서의 유지보수비에 해당되지 않고, 표준 손익계산서의 ‘기타’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동 보험료는 유지보수가 아니라 가동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운영비(operating costs)에 해당되

며,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에 구분·정의되어 있는 ‘발전설비 및 해당 전력계통연계 시설의 유지보수비(해당 설비와 시설에 대한 수익적 지출액)’에 해당되지 않고, 인건비와 지급임차료를 제외한 기타의 운영비에 해당됨

- 화재로 인해 고장이 난 풍력터빈을 보수하였을 때 보험회사로 받은 보험금과 풍력터빈을 보수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의 차이는 보험차익임

\* Establishing the investment case wind power(Deloitte, 2014, p.14)

Some operating costs such as land lease, insurance, management costs and maintenance costs (O&M) can be fixed at a yearly amount(토지임차료, 보험료, 관리비용, 유지보수비와 같은 운영비용의 일부는 1년 금액으로 고정될 수 있다.)

\* O&M의 일반적인 예산에는 정기 및 비정기 유지보수, 예비부품, 보험, 전문인력 등이 포함됨[사내 풍력 유지보수프로그램 확립(Establishing an In-House Wind Maintenance Program),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2012) p.194에서 재인용]

- 다만, 보험료 중 유지보수 기능과 직접 관련이 있는(발전설비 및 해당 전력계통연계 시설의 수리에 사용하는) 지게차 및 차량의 보험료는 유지보수비에 해당됨

### (송전선로이용료)

○ 송전선로이용료는 표준 손익계산서의 유지보수비에 해당되지 않고, 표준 손익계산서의 ‘지급임차료’ 또는 ‘기타’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송전선로이용료는 유지보수가 아니라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의 시설을 이용한 대가로 지출된 비용(타인 소유라는 점에서 지급임차료와 유사함)으로, 운영비(operating costs)에 해당되며, 개

발이익 공유화 약정서에 구분·정의되어 있는 ‘발전설비 및 해당 전력계통연계 시설의 유지보수비(해당 설비와 시설에 대한 수익적 지출액)’에 해당되지 않고, 인건비와 지급임차료를 제외한 기타의 운영비에 해당됨

- 송전선로이용료는 송전선로를 자체적으로 설치하였다면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금액으로 감가상각비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실제 발생한 금액을 인정하는 표준 손익계산서의 비용(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송전선로이용료는 감가상각비도 아니고 유지보수비도 아님
- 자체적으로 설치하였다면 사용기간에 걸쳐 매년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고 타인 소유의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기간에 임차료비용이 발생하는 것임
- 따라서 임차료비용은 표준 손익계산서의 유지보수비 즉, 풍력발전지구에 위치한 발전설비 및 해당 전력계통연계 시설의 유지보수비(해당 설비와 시설에 대한 수익적 지출액)가 아니라 시설 이용료(표준 손익계산서에서 지급임차료 또는 기타)임
- \* 수익적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회사 소유의 자산에 대한 지출 중 자본적 지출(해당 자산에 추가되는 원가)이 아닌 것(비용)을 칭할 때 쓰는 회계 용어로서 타인 소유의 자산의 이용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수익적 지출이라고는 하지 않음
- \* 송전선로이용료도 표준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토지를 제외한 타인 소유의 자산(풍력발전지구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계통연계 시설)의 이용료도 감가상각비에 포함한다는 예외적 문구가 이익공유화 약정서의 ‘감가상각비’ 부분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이 밖에 유지보수비에 해당되지 않는 예는 다음과 같음

- 발전설비 및 해당 전력계통연계 시설 외의 시설 등의 유지보수비(발전기 주변 비포장으로 인한 보수비, 진입금지 펜스 등의 수선비 등)
- 정비인력 산재보험료와 의료보험료 등(인건비에 해당됨)
- 수도광열비
- 통신요금
- 송전요금
- 지급수수료
- 교육훈련비
- 출장비
- 유지보수와 직접 관련 없는 차량 및 장비 등의 유류비와 임차료
- 자문료, 세미나 및 연구용역비
- 유지보수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역비(보안 및 경비 등)

○ <표 2-12>에는 A사의 재무성과와 투자수익률을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음

<표 2-12> A사의 재무성과와 투자수익률 분석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매출액	12,890	11,883
당기순이익	2,251	1,462
세금효과반영한 순이익	1,778	1,162
주주의 납입자본	6,000	6,000
평균 차입금	76,488	73,512
총투자금액	82,488	79,512
차입이자율	4.3%	4.3%
납입자본순이익률	<b>25.1%</b>	<b>15.2%</b>
총투자수익률	6.1%	5.4%
이익공유액 (매출액 비율) (당기순이익 비율)	<b>351</b> <b>(2.9%)</b> <b>(15.6%)</b>	<b>322</b> <b>(2.9%)</b> <b>(22.0%)</b>

- 2016년과 2017년의 이익공유액은 해당 연도 매출액의 2.9%(매출액기준 환산율)가 적용되어 각각 351백만원과 322백만원이며, 이러한 이익공유액은 각각 당기순이익의 15.6%와 22.0%에 해당됨
- A사의 주주가 납입한 자본은 2016년 총투자자금 82,488백만원의 7.3%인 60억원이고, SMP가 연평균 91.32원/kWh인 상황에서도 차입금 조달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에 따라 납입자본에 대한 2016년 1년간의 투자수익률(이익공유액 반영 후 당기순이익/납입자본금)은 25.1%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납입자본금과 차입금의 합계인 총투자자금 82,488백만원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6.1%임
- SMP가 연평균 119.62원/kWh로 전연도 보다 상승하였음에도 REC 가격의 하락과 일시 발전중단 등으로 인해 2017년의 경우 총투자자금 79,512백만원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5.4%로 하락하였고 납입자본에 대한 투자수익률도 15.2%로 하락함
  - 수익성이 크게 하락하였음에도 이자율이 4.3%인 차입금이 투자자금의 대부분(92.5%)이기 때문에 이익공유화에 따른 기부금 납부 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납입자본에 대한 투자수익률(15.2%)이 발생하고 있음
    - \* 2016년과 2017년을 비교해 볼 때 투자수익의 변동성(표준편차)으로 정의되는 투자위험이 부채비율이 높고 자기자본비율은 적을수록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 납입자본순이익률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2.3 매출액기준 환산율 산정 방법 개선

### 가. 매출액만 조정하는 방안

- 현재의 가시리·김녕 지구의 이익공유화 약정서에서 기부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cdot \text{선기부금} = \text{매출액} \times 7\%$$

$$\cdot \text{확정기부금} = \text{매출액} \times X$$

\* 7% 대신 **매출액기준 환산율(X)**로 조정하여 확정함

$$\text{표준 매출액} \times X(\text{매출액기준 환산율}) = \text{표준 당기순이익} \times 17.5\%$$

$$X = \frac{\text{표준 당기순이익} \times 17.5\%}{\text{표준 매출액}}$$

- 현재의 이익공유화 약정서에서는 매출액기준 환산율 산정을 위해 **표준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매출액 · 감가상각비 · 유지보수비**는 실제 발생한 금액을 적용하고, 이익공유화에 따른 **기부금**은 다음연도의 비용으로 추가 산입하고 있음

\* 인건비, 지급임차료, 순이자비용, 기타 비용은 미리 정해진 금액을 적용하여 표준 당기순이익을 산정함

- 앞으로도 **유지보수비**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는 계속 존재할 것이고, 이익공유화에 따른 **기부금**의 추가 비용 산입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음

- 현재의 매출액기준 환산율 산정방법은 매출액 비율을 7%로 고정할 경우에는 이후 계통한계가격(SMP)과 REC 가격이 하락한 때에는 낮은 수익성에 비해 과도한 기부금을 부담하므로, 향후 **수익성 변동에 따라 매출액에 적용하는 비율을 조정**하자는 사업자 측의 요청을 제주도가 수용한 것임(제주특별자치도, 2014)

-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제주특별자치도, 2014) 마련 시 추정된 주요 비용(표준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실제 발생한 금액을 적용함)인 감가상각비와 유지보수비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실제 발생한 해당 비용의 합계

액(감가상각비 + 유지보수비 + 기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 추정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표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매출액만 조정하는 방안이 간편성과 조정과정에서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고 당초의 취지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매출액만 조정할 경우, 설비용량의 조정과 비정상적인 고장 또는 비정기적인 수리로 인해 정상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매출액을 제외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는 내용(기간의 조정)이 있으면 됨

$$\cdot \text{매출액} = (\text{실제 매출액} - \text{해당기간 매출액}) \times [ 365 \div (365 - \text{해당기간 일수}) ]$$

#### 나. 일부 실무적 사항을 보완하는 방안

- 매출액기준 환산율 산정을 위해 표준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매출액 · 감가상각비 · 유지보수비는 실제 발생한 금액을 적용하고, 이익공유화에 따른 기부금은 다음 연도의 비용으로 추가 산입하는 기존의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실무적 사항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 기간의 조정

- 비정상적인 고장 또는 비정기적인 수리로 인해 정상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매출액과 유지보수비는 제외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함(제주특별자치도, 2014, p.28)

$$\cdot \text{매출액} = (\text{실제 매출액} - \text{해당기간 매출액}) \times [ 365 \div (365 - \text{해당기간 일수}) ]$$

$$\cdot \text{유지보수비} = (\text{실제 발생한 유지보수비} - \text{해당기간 유지보수비}) \times [ 365 \div (365 - \text{해당기간 일수}) ]$$

- 비정상적인 고장 또는 비정기적인 수리로 인해 정상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줄어들므로 정상가동 했을 때의 조건으로 조정하기 위해 (실제 매출액 - 해당기간 매출액)에서 조정일수  $365 \div (365 - \text{해당기간 일수})$  를 곱해줌
  - 이것은 매출액기준 환산율은 발전회사의 평균 매출액을 이용하여 산정하므로 정상적인 발전조건으로 조정한 후 평균을 구하기 위한 것임
- 비정상적인 고장 또는 비정기적인 수리로 인한 유지보수비를 집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실무적 편의를 위해 비정상적인 고장 또는 비정기적인 수리로 인해 정상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간 매출액과 일수 조정을 해주지만, 유지보수비는 해당 기간 유지보수비와 일수 조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정안)

- 비정상적인 고장 또는 비정기적인 수리로 인해 정상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매출액을 제외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함
  - 매출액 = (실제 매출액 - 해당기간 매출액)  $\times [ 365 \div (365 - \text{해당기간 일수}) ]$

#### □ 회계처리기준

- 매출액기준 환산율 산정에 있어서 특별히 언급하는 회계처리(예: 매출액의 측정과 기간귀속) 등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회사의 경우는 수익과 비용을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조정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가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함



(개정안)

- 매출액의 측정과 기간귀속 등은 해당 회사가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름
- 위 사항 외에 수익적 지출 등 재무제표의 자산에 계상할 수 없어 감가상각대상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의 구분은 해당 회사가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름
  - 풍력발전지구에 위치한 발전설비 및 해당 전력계통연계 시설의 유지보수비(해당 설비와 시설에 대한 수익적 지출액)가 해당되며, 그 발생기간의 귀속은 해당 회사가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름

□ 유지보수비 해당 여부

-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에 따른 유지보수비는 다음과 같음

풍력발전지구에 위치한 발전설비 및 해당 전력계통연계 시설의 유지보수비(해당 설비와 시설에 대한 수익적 지출액)가 해당됨

- 표준 손익계산서 작성과 확인 시 유지보수비 해당 여부에 대해 의견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해 매뉴얼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그 사례를 제시함
  - 유지보수비에 해당되는 사례
    - 풍력터빈 제조회사와 장기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 풍력발전지구에 위치한 발전설비 및 해당 전력계통연계 시설에 대한 예방 및 정비 비용, 수선비, 소모품비, 청소용역비
    - 정비 및 수리 시 발생하는 폐오일, 폐기자재 등 폐기물처리비용
    - 유지보수 기능과 직접 관련이 있는(발전설비 및 해당 전력계통연계 시설의 수리에 사용하는) 차량 및 장비 등의 유류비, 보험료, 임차료

- 유지보수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 발전설비 및 해당 전력계통연계 시설 외의 시설 등의 유지보수비(발전기 주변 비포장으로 인한 보수비, 진입금지 펜스 등의 수선비 등)
  - 보험료[유지보수 기능과 직접 관련이 있는(발전설비 및 해당 전력계통연계 시설의 수리에 사용하는) 차량 및 지게차의 보험료는 수선유지비에 해당됨]
  - 송전선로 이용료
  - 정비인력 산재보험료와 의료보험료 등(인건비에 해당됨)
  - 수도광열비
  - 통신요금
  - 송전요금
  - 지급수수료
  - 출장비 및 교육훈련비
  - 발전설비 및 해당 전력계통연계 시설의 유지보수와 직접 관련 없는 차량 및 장비 등의 유류비와 임차료
  - 자문료, 세미나 및 연구용역비
  - 유지보수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역비(보안 및 경비 등)

#### 2.2.4 이익공유액의 3년 주기 조정

- 가시리 지구와 김녕 지구의 경우는 매년 매출액의 7%를 기부한 후, 3년 주기로 매출액  $\times$  X(매출액기준 환산율)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풍력발전 사업자들은 매출액의 7%를 기부한 후 3년 주기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매년 매출액  $\times$  X(매출액기준 환산율)로 확정하여 기부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음
- 매출액의 7%를 다음 연도 6월 말 까지 기부하고 3년을 주기로 매출액  $\times$  매출액기준 환산율로 조정함에 따라 향후 과납분 발생이 확실시 되어 매년 확정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임

-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에 따르면 기부금을 회계연도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매년 자료를 제출하고 기부금액을 확정하여 기부금을 내는데 3개월의 기간(결산·세무신고 기한 후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2018년과 같이 조정 과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확정된 기부금을 납부하는데 긴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매출액의 7%를 다음 연도 6월 말 까지 기부하고 3년을 주기로 매출액 × 매출액기준 환산율로 조정함에 따라 향후 과납분 발생이 확실시 되어 매년 납부 방식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됨
  
- 매출액 × 7%는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에 원칙을 정한 사항이고 이에 대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항이므로 상징성이 있고 다만, 향후 수익성 변동에 따라 매출액에 적용하는 비율을 조정하자는 사업자 측의 요청을 제주도가 수용한 것임
  - 향후 SMP와 REC 가격의 급변에 따른 수익성 변화는 충분히 가능하므로 현재와 같이 향후에도 매출액기준 환산율이 7%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쉽게 예단할 수 없음
  
- 따라서 매출액의 7%를 다음 연도 6월 말 까지 기부하고 3년을 주기로 매출액 × 매출액기준 환산율로 조정한다는 현재의 약정서 내용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실무적으로는** 3년 주기 중 1년차와 2년차에 대해서는 **매년** 매출액 × 매출액기준 환산율로 조정하고, 조정 금액이 확정되었을 때는 3년 주기 전이라도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함** → 확정 정산 후에는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에 편입함
  
- 표준 손익계산서 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기한**(예: 4월말까지) 등 조정 절차에 대한 내용은 관련 매뉴얼에 자세히 설명함

## 2.3 이익공유화 약정서 이행담보 방안

### 2.3.1 이익공유화 약정서 이행과 이행보증보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
-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3조 제1항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전기사업 허가의 세부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외의 ‘풍력발전사업 전기사업 허가의 세부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제주특별법 제330조 제4항, 대법원 판례 2013추81)
- 제주풍력발전사업의 허가는 특허이자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제주풍력발전사업허가를 함에 있어 그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원하게 하는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급부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판례는 재량행위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부담을 붙일 수 있다는 입장임(제주특별자치도, 2014)
- 부담의 불이행은 행정 강제 사유가 되기도 하고, 행정행위의 철회의 사유가 되기도 함(대법원 판례 1989.10.24. 89누2431)

- 따라서 풍력발전사업허가가 있는 후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부담의 불이행으로 보아 허가의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제주특별자치도, 2014)
- 이익공유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풍력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부제소 특약'을 약정서에 명기하고 있음[부제소특약은 소송상의 합의로서 서로가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한 것임. 판례는 이러한 소송상의 합의를 항변권발생설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르면 당사자는 부제소특약이 있었음을 소송절차에서 항변할 수 있고, 위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판결을 내리게 됨(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판결 등)]
- 더욱이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음(제주특별법 제304조 제1항 및 제6조)
- **법률의 위임에 따라** 도조례에서는 풍력발전 개발·이용 허가기간은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 이내로 하고,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발전사업자에게는 허가기간 연장을 제한함(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제1항 및 제3항, 대법원 판례 2013추81)
-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에 허위서류 제출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풍력발전지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기

간을 **단축** 할 수 있음(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5항 제5호)

- 이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발전사업자가 이익공유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규 및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에 따라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충분히 **이익공유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한편,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예상 기부금액에 대하여 3년 단위로 제주도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증서를 제출할 것을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발전사업자가 이익공유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규 및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에 따라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행보증보험계약은 이익공유의 이행을 담보할 추가적 효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 그 실효성이 의문이고, 더욱이 그 비용을 제주도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2.3.2 행정적 지원 강화

-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는 제주의 풍력자원의 지속적인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제주풍력발전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풍력발전사업자가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향후 풍력발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제주도가 일정 부분을 공유할 수 있음을 합의하고 이에 따른 상호간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한 이후에도 풍력발전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제주도가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풍력발전사업자가 풍력발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공유화 약정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토대가 될 수 있음**

- 개발이익 공유화에 대한 논의를 할 당시 공공자원인 제주의 풍력자원의 가치가 높은 것은 풍력의 질(바람의 양과 강도 등)이 우수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전력판매가격인 SMP가 육지에 비해 제주도가 높은 요인도 있었음
  - 이와 같이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제주의 SMP는 제주풍력발전 사업의 수익성을 높게 하여 개발이익의 공유화에 따른 수익성 하락을 상쇄시키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됨
- 제주의 SMP가 높은 것은 제주의 전력생산 원가가 높기 때문이며, 전력생산 원가가 높은 도서 지역인 제주에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인 풍력으로 대체하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제주SMP에 따른 제주풍력발전의 높은 수익성은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 체결 이후에 다음과 같은 중앙정부의 REC 가격 정책에 의해 거의 없어지게 된 상황임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기준 육지-제주 기준가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

(단위 : 원/REC, 원/kWh)

$\text{기준가격}_{\text{제주}} = \text{기준가격}_{\text{육지}} - \{(\text{SMP}_{\text{제주}} - \text{SMP}_{\text{육지}}) \div \text{가중치} \times 1,000 \times 0.9\}$
---

\* 이 기준은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육지-제주 기준가격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자부 고시) <별표 4>임

- 경제적 영향: 공급의무자는 구입한 제주 REC에 대해 직전연도  $[\text{SMP}_{\text{제주}} - \text{SMP}_{\text{육지}}]$ 의 90%만큼 비용보전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제주 REC에 대해 직전연도  $[\text{SMP}_{\text{제주}} - \text{SMP}_{\text{육지}}]$ 의 90%만큼은 할인하여 구입하고자 할 것임

- 제주 발전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육지-제주 기준가격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보다 REC 단위당  $[SMP_{\text{제주}} - SMP_{\text{육지}}]$  정도의 REC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전년도  $[SMP_{\text{제주}} - SMP_{\text{육지}}]$ 보다 당년도  $[SMP_{\text{제주}} - SMP_{\text{육지}}]$ 가 작은 경우에는 단위당 발전수입이 육지 발전사업자보다도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 가능함

$$* \text{발전수입} = (\text{SMP} + \text{REC 가격}) \times \text{전력생산량}$$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REC 가격에 SMP를 합산한 가격을 고정가격으로 하는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REC 가격을 고정하는 계약 대신에 REC 가격이 SMP에 연동되는 고정가격계약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임

- 고정가격계약의 경우 제주REC는 육지REC에 비해 REC 단위당  $[SMP_{\text{제주}} - SMP_{\text{육지}}]$  만큼 가격이 낮아지게 됨

$$* \text{고정가격} = \text{SMP} + \text{REC 가격}$$

$$\text{REC 가격} = \text{고정가격} - \text{SMP}$$

$$\text{SMP} \uparrow \Rightarrow \text{REC 가격} \downarrow$$

$$\text{SMP} \downarrow \Rightarrow \text{REC 가격} \uparrow$$

- \* 고정가격 200원/kWh 계약의 경우

$$\text{육지 REC 가격} = 200 - 110(\text{육지 SMP}) = 90(\text{원/kWh})$$

$$\text{제주 REC 가격} = 200 - 160(\text{제주 SMP}) = 40(\text{원/kWh})$$

- 의무이행비용 보전의 시행을 위한 규정(산자부 고시)이 법 취지와 위임 범위를 넘어 제주 REC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바, 육지-제주 기준가격의 구분의 폐지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육지 SMP를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제주도에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함으로써 제주풍력발전의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제도 개선은 현재의 육상풍력발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뿐만 아니라 향후 제주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



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제도개선 내용)**

산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는 육지-제주 기준가격을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전력거래소의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의 ‘18.5.3 육지-제주 기준가격 구분 산정’ 등의 내용을 삭제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주 REC에 대해 육지 REC와 구분 없이 육지 SMP를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2.3.3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사용과 홍보**

- 풍력개발이익 공유화에 따른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은 풍력발전 및 제주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제주특별자치도, 2014)
  - 자연경관 훼손 등 제주의 환경 및 도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대가 측면도 있으므로 지역사회 환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외계층 지원 사업(전기와 유류 등 에너지 요금 지원, 장학금 등), 제주도 문화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의 현행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
  - 재생에너지 교육 및 홍보 지원 사업
  -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기부자가 지정하는 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금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지만,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또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수혜대상을 넓혀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홍보 전략이라 할 수 있음
- 제주의 환경 및 주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 풍력개발에 따른 외부비경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반 도민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므로, 사회 환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학금 등 육영사업, 문화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에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까지 수혜의 폭을 확대할 수 있음
  - 수혜의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구전효과가 있기 때문에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존재와 기금이 제주 지역사회의 발전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도민에게 널리 알려져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추가 용도
    - (육영사업)
      - 취약계층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학비, 학용품, 식비 관련 지출 등에 사용
      -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취약계층 학생 선진 국가 에너지·문화 체험 지원 사업
    - (제주 문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 복리 지원 사업)
      - 제주사회 치유, 제주문화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 문화·예술 공연 지원 사업
      - 선진 사회·문화 실현을 위한 공익광고 지원 사업



# Ⅲ. 해상풍력 이익공유화 방안

---

3.1 발전기금 출연 약정서 검토	55
3.2 해상풍력 이익공유화 방안	62
3.3 이익공유화 방안의 구체적 기준과 영향 분석	70



### Ⅲ. 해상풍력 이익공유화 방안

#### 3.1 발전기금 출연 약정서 검토

##### 3.1.1 사업허가 후에 이루어진 발전기금 출연 약정

-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이익공유화 논의가 있기 전에 사업허가가 나서 현재 한경면 두모·금등리 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탐라 해상풍력**의 이익공유화 관련 발전기금 출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준공 후 즉시 10억원 제주도에 현금 출현
  - 사업 운영 개시 후 2억원에 연 1.25%를 가산한 금액을 10회 걸쳐 매년 1월에 현금 출연
- 탐라해상풍력은 해안에서 가까워 육상과 해상의 양면적 측면이 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해안에서 1km 이상 이격거리가 유지되어 향후에 허가가 이루어질 해상풍력발전사업과는 다른 측면이 있음
  - 앞으로 상황에 따라 수심이 높은 바깥쪽으로 증설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 제주도 및 지역 사회와 보다 전향적인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3.1.2 시범사업 예정자의 발전기금 약정

-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 경과
  - 제주도와 한국전력기술(주) 간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0. 12. 14.
  - 업무협약에 따른 세부약정서 체결: 2011.8.3.
  - 지역공모를 통해 사업위치(수원리 해상) 선정: 2011. 4. 27.

- 한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계획안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계획안: 귀덕 1·2리·수원리 → 심의결과: 귀덕2리·수원리): 2012. 7. 24.
  - 지구지정 계획 변경(당초: 수원리, 귀덕1, 2리 → 변경: 수원리): 2013. 6. 14.
  -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안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원안의결): 2013. 9. 24.
- 제주해상풍력의 시범사업인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업무협약에 근거한 **세부약정서(2011.8.3.)**에 따르면, 동 사업과 관계없이 동 사업의 준공 이후 운영단계에서 운영수익이 발생하여 주주배당을 실시할 때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측면에서 **배당금 총액의 17.5%**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고 되어 있음
- 주주가 제공한 자본에 대한 대가인 배당금과 이익공유액을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배당금 지급시기와 금액은 임의로 조절 가능하므로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은 당해 기간 동안 이익공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음(제주특별자치도, 2014)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2012)에서도 해상풍력 시범단지 이익 공유방안과 관련하여, 이익이나 배당금의 일정률은 적절한 기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음
  - 차입금 비율에 따라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이 달라지므로(투자자금 중 차입금을 많이 쓸수록 배당금은 줄어듦) 배당금기준은 공평한 이익공유화 방안이 아님
- \* 자금조달을 과도하게 차입금에 의존할 경우 당기순이익이 작아지고 이익공유액도 작아지지만, 이익공유 후에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은 상대적으로 작은 납입자본에 비해 과도(배당금/납입자본금이 과도해짐)해 질 수 있음(배당금기준도 같은 문제가 발생함). 또한

수익성이 높지 않을 경우 차입금이 상환되는 사업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짐

- 풍력발전개발이익 공유화 방안(제주특별자치도, 2014)에서 배당금 기준은 육상풍력 이익공유화 방법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해당 내용 중 다음과 같이 '17.5%'를 적용할 때 '매출액기준에 따른 이익공유 방안'을 제시함

- 표준 추정 손익계산서로 산정할 경우 당기순이익의 17.5%에 상응하는 금액은 매출액기준으로는 '당기 매출액의 7.0%'임

- 한국전력기술(주)가 주관한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의 발전기금 약정은 2011년 5월 23일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규정이 제주특별법에 명시되었지만 관련 도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풍력자원의 개발이익에 대한 공유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제주의소리, 2011.6.22.)에서 이루어진 것임

- 불확실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특성상 수익성이 확보되고 자금상황이 안정적으로 되어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 제주도에 발전기금으로 기부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됨

- 또 다른 시범사업 예장자인 대정해상풍력의 경우는 별도의 기부금 약정이 없음

-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의 세부약정서상 발전기금의 내용(배당금 총액의 17.5%)은 제2장에서 살펴본 육상풍력발전사업(발전사업자가 사유지 이용의 대가로 토지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음) 이익공유화 약정서상의 이익공유의 내용(매출액에 표준 당기순이익의 17.5%에 상당하는 매출액기준 환산율을 곱한 금액)보다도 이익공유화 금액의 정도가 낮고, 기부 시기가 늦으며 그 시기도 조절 가능함



- 제주한림해상풍력(주)는 풍력자원 개발이익 이익공유화와 관련하여 한국 전력기술(주)가 제주도와 체결한 해상풍력발전사업 세부약정서(2011.8.3.)에 있는 발전기금의 기부(배당금 총액의 17.5%)에 대한 내용으로 하고, 이에 대한 수정은 어렵다는 의견임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2012)에 따르면, 양해각서(MOU)를 통해 풍력발전 이익의 일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시범단지 사업예정자에 대해서는 해상풍력발전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개발사업 추진 이행계획서 세부사항에 풍력발전사업으로 인한 이익 공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이익이나 배당금의 일정률보다는** 전력판매수입, 투자금액 또는 시설용량의 일정 수준이 적절한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음(p.123, p.126)
  
- 이후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은 2013년 9월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풍력발전지구지정이 의결됐고, 같은 해 12월24일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까지 통과하여 12월 31일에 지구지정이 고시됨
  - 조례에 따르면, 지구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면적의 축소 또는 지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
  
  - 지구지정 후 3차례에 걸쳐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기한을 제주도로부터 **연장 받고**, 한국전력과 중부발전이 각각 29%와 23%의 지분을 갖고 한국전력기술(당초의 사업추진 주체로서 2011년 제주도와 해상풍력발전사업 세부약정서를 체결함)은 5%의 지분을 갖기로 되어 있어서 **사업자가 바뀌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특혜라는 의견이** 도의회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제주의소리, 2017.10.23.)

- 지구지정을 받은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 대정해상풍력은 아직 지구지정을 받지 못함에 따라, ‘Cabon Free Island 제주 By 2030’에 따른 해상풍력발전 시범사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금전 이외)인 해상풍력발전 상업화 관련 **정보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시범사업의 당초 취지가 그 의미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제주에너지공사는 해상풍력 시범사업 이후 단계인 확산화 단계라 할 수 있는 한동평대해상풍력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음
  - 해상풍력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주요 추정 재무자료**는 제주한림해상풍력(주)의 **영업비밀로 보호**되고 있어서 제주도나 제주에너지공사가 현재 입수하기가 어려움
  - 제주도가 해상풍력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한동평대해상풍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에너지공사가 해상풍력발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인 해상풍력 관련 주요 실제 또는 추정 재무정보 등을 제주해상풍력 시범사업을 통해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당초에는 상업화를 위한 시범지구를 운영하고 이후 상업적 사업을 확산하는 전략을 세웠으나(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2012, p.109), 결국 제주해상풍력발전사업의 1단계 중 ‘시범’과 ‘확산’의 구분이 없어진 상황임
- 지금까지 진행된 이러한 해상풍력 시범사업 관련 **제반 상황과 세부약정서의 성격을 종합해 볼 때**, 한국전력기술(주)가 제주도와 체결한 해상풍력발전사업 세부약정서(2011.8.3.)의 내용으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확정하는 것 보다는 **‘3.2 해상풍력 이익공유화 방안’**을 같은 시범사업 예정자인 대정해상풍력발전(주)와 같이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주도 해상풍력발전 시범사업인 한림해상풍력과 대정해상풍력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2012)**에서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음
  - 해상풍력발전사업 초기에는 해상풍력 시범단지에서 **해상풍력발전 상업화를 통해 풍력발전시스템 운영기술 노하우를 확보하고 적정이윤 확보 가능성을 검증** 후 시범단지 외로 **상업화를 확산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로드 맵이 필요함
  - 제주도 연안은 우리나라 서남해안과 달리 수심이 급속히 깊어져서 해상풍력발전 가능해역이 해안선으로부터 가깝고 해상풍력발전 가능해역이 제한적이므로 **해상풍력발전 가능해역의 사용에 따른 기회비용이 서남해안보다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음
  -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에서 이루어지는 **해상풍력 상업화 시범사업은 해상풍력발전설비 운영기술 노하우를 확보하고 적정이윤 확보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시범지구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산 해상풍력 터빈 개발과 운영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서남해안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상의 실증·시범단지 단계와 달리 제주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범단지 운영에서는 이미 외국의 많은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되어 검증된 풍력발전 설비와 설치 기술이 채택되고 검증된 운영 시스템의 도입될 필요가 있음
  - 설치단계에서는 선진 설치기술을 습득하고, 외국에서 검증된 풍력발전설비가 제주도의 기후조건 등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지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고, 풍력발전설비 운영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 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운영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시범지구의 해상풍력사업 과정에서 얻은 **풍력발전시스템 운영기술 노하우와 적정이윤 확보 가능성 관련 정보** 등은 당해 시범지구 발전사업자만의 자산이 아니라 **공공의 자산**으로써 시범단지 사업자와 사전 협약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향후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주체인 제주 에너지공사가 공유하도록 하여야 함**

## 3.2 해상풍력 이익공유화 방안

### 3.2.1 이익공유 방법론 검토

- 이익공유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제주특별자치도(2014)의 내용을 기초로 이익공유 방법론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 당기순이익기준

- **최종적인 재무성과**(주주의 몫)인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므로 경영진과 주주 입장에서 볼 때 적합한 기준임

- 부채(이자비용 발생)의 조달 규모와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비용 발생액이 각 사업자마다 상이한 요인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달라지므로 이익공유의 기업 간 형평성이 저하됨

※ 특정 주주는 당기순이익 증가로 인한 **배당금 확보**라는 일반적인 목적보다는 RPS 이행목표 달성, 풍력터빈 등의 실증이력 확보나 관련 기술 습득이 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하는 주된 목적일 수 있는바, 이 경우는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자금조달을 과도하게 차입금에 의존할 경우 당기순이익이 작아지고 이익공유액도 작아지지만, 이익공유 후에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은 상대적으로 작은 납입자본에 비해 과도(배당금/납입자본금이 과도해 짐)해 질 수 있음(배당금기준도 같은 문제가 발생함)

- 이익조정 행위(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과도한 인건비와 외주비, 기부금 등)를 통해 이익공유액의 조절이 가능함

- 당기순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당기순이익에 적용할 이익공유 비율(%)**이 작을 수밖에 없고, 사업자 측면에서는 작은 당기순이익에 대해 이익공유화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당초 예상보다 수익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에 적용할 이익공유 비율(%)이 낮게 정해져 있어 주주가 배당으로 갖고 가는 금액에 비해 이익공유액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므로 적정한 이익공유화가 되기 어려움

## (2) 매출액기준

- 객관적이고 명확하며 간단하므로 적용하기에 쉬움
- 해상풍력발전은 공공의 자산인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사용료 지불** 관점에서 볼 때 사업의 수익성에 **관계없이 매출액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음**(예: 면세점과 카지노 특허 시 매출액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매출액기준은 당기순이익기준과 달리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비용에 영향을 받지 않아 발전사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매출액이 예상과 크게 다를 경우(SMP와 REC 가격의 큰 변동성으로 인해 풍력발전사업의 매출액 변동성도 큼) **사전에 정한 일정율(%) 적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예상보다 매출이 작을 경우** ⇒ 상대적으로 과대한 기부금 지출 (수익성이 낮으면 매출액 비율도 낮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사전에 정한 일정율 적용으로 수익성이 낮은데도 많은 기부금이 지출됨 → 경영에 부담)
  - **예상보다 매출이 클 경우** ⇒ 상대적으로 과소한 기부금 지출 (수익성이 높으면 매출액 비율도 높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사전에 정한 일정율 적용으로 수익성이 높은데도 적은 기부금이 지출됨 → 이익공유액에 비해 주주의 몫이 크게 증가함)
- 사유지를 임대하여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육상풍력의 이익공유화 원칙

이 매출액 × 7%인 점을 감안하면, 공유수면을 이용하고 해안에서 1km 정도로 이격되어 있어 제주 해안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에는 이익공유화 금액이 매출액 × 7% 이상이 되어야 수용 가능성이 높을 것임

- 이러한 매출액기준과 풍력발전사업의 특성 때문에 매출액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업자들은 사업을 추진할 때 리스크 관리나 자금 조달 측면에서 높은 매출액 비율을 수용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매출액기준 만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주도 사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이익공유액 확보가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3) 초과이익기준

- 초과이익기준은 풍력자원 이익공유화 개념에 가장 부합되는 기준임
  - \* 이익공유화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의 독점적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초과이익(일종의 독점이익)에 대해 해당 풍력발전 사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도민)가 개발이익을 공유함
  - \* 초과이익 = 실제 이익 - 정상이익(= 투자 자본 × 투자자본 요구수익률)
    - 실제 이익 = 세후 영업이익 = 영업이익 × (1 - 세율)
  - 요구수익률(required rate of return)은 투자자(주주와 자금대여자)가 해당 투자에 대해 바라는 수익률로, 필수수익률 또는 기대수익률이라고도 함

(예시)

- 타인자본(자금대여자) 요구수익률: 4.5%(차입이자율)
- 자기자본(주주) 요구수익률: 11%
- 자금조달: 자기자본 20%, 차입금 80%

- 법인세율(부가되는 세액 포함): 22%

$$\begin{aligned} \text{투자자본 요구수익률} &= 11\% \times 20\% + 4.5\% \times (1-0.22) \times 80\% \\ &= 5\% \end{aligned}$$

- 투자자본 요구수익률(필수수익률, 기대수익률)이 6%일 경우 투자금의 자기자본 조달액과 차입금 조달액(차입이자율 4.5%)의 비율이 각각 20%와 80%이고 세율이 22%일 때 자기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은 16% 인바, 이것은 해상풍력발전에서 상당한 정도의 자기자본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음

- 투자자본 요구수익률(요구수익률, 기대수익률): 6%
- 차입이자율: 4.5%
- 자금조달: 자기자본 20%, 차입금 80%
- 법인세율(부가되는 세액 포함): 22%

$$\text{투자자본 요구수익률} = X \times 20\% + 4.5\% \times (1-0.22) \times 80\% = 6\%$$

$$\therefore \text{자기자본 요구수익률}(X) = 16\%$$

- 초과이익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2012.11.)에서 해상풍력발전의 이익공유화 기준으로 제시된 방법임
- 초과이익기준을 적용할 때 유의할 점은 투자 자본의 정의, 투자자가 요구하는 요구수익률 수준의 결정, 초과이익에 대한 배분비율의 결정임
- 높은 요구수익률 적용 시 초과이익에 대한 배분비율도 커지고 따라서 매출액과 수익성 변동에 따라 초과이익과 기부금의 변동성 커짐(낮은 수익성 상황에서는 기부금이 없고, 높은 수익성 상황에서는 주주의 배당금에 비해 높은 기부금이 발생)
- 따라서 현 상황과 향후 전망치 등을 감안할 때 요구수익률은 5%에서 8% 수준에서 정할 수 있고, 해당 요구수익률 수준별로 적정한 초과이익에 대한 배분비율을 정하면 됨



- 요구수익률이 낮을 경우 초과이익에 대한 배분비율도 작고, 요구수익률이 높을 경우 초과이익에 대한 배분비율도 높음

- **초과이익** = 실제 이익 - 정상이익(= 투자 자본 × 투자자본 **요구수익률**)
- **이익공유액** = 초과이익 × 배분비율

(예시)

- 요구수익률: 5% → 초과이익 배분비율: 30%
- 요구수익률: 6% → 초과이익 배분비율: 40%
- 요구수익률: 7% → 초과이익 배분비율: 50%
- 요구수익률: 8% → 초과이익 배분비율: 60%

○ 초과이익도 실제의 이익에 기초한 이익공유화 방법이므로 당기순이익기준에서 언급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풍력터빈 이용률과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비용 발생액이 각 사업자마다 상이한 요인으로 인해 실제 이익이 달라지므로 이익공유의 기업 간 형평성이 저하됨
- 특정 주주는 당기순이익 증가로 인한 배당금 확보라는 일반적인 사업목적보다는 **RPS 이행목표 달성, 풍력터빈 등의 실증이력 확보나 관련 기술 습득**이 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하는 주된 목적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업목적에 따라 풍력발전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초과이익도 낮을 것임 ⇒ 이익공유화 금액도 낮아짐

※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특정 풍력터빈의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때에도 해당 SPC의 경제 외적 요인을 고려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다른 풍력터빈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풍력 발전사업의 수익성이 높지 않을 것임(해상풍력발전을 위한 SPC의 주주에 풍력터빈 제조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와 정부정책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기업 이 SPC의 대주주인 경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초과이익기준을 적용할 경우 발전사업자의 사업 운영방식에 따라 실제 이익과 초과이익도 크게 달라질 것이고 따라서 기업 간 형평성이 저하됨
  - 특히 풍력발전사업자가 경제성 측면을 고려한 사업 운영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향후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익공유화 금액은 크게 낮아질 수 있음
  -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일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할 수 있음
- 초과이익기준의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출액기준도 함께 적용하여 수익성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이익공유액을 정할 필요가 있음

### 3.2.2 이익공유화 방안

- 급격한 수심 증가와 자연경관 보호가 중요한 제주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제한적인 입지와 현재 낮은 수익성이 예상되는 제주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 이익공유화 방법으로 매출액기준이나 당기순이익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기가 어려움
  - 육상풍력의 경우를 준용할 때 적용 가능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매출액 × 7% 이상
    - 당기순이익 × 17.5% 이상
  - 매출액기준이나 당기순이익기준은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됨
  - 적용하는 경우에도 낮은 수익성이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는 매출액 비율이나 당기순이익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적정 수준의 이익공유액 확보가 어려움

- 이익공유화 방법으로 공공의 자산인 풍력과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해상풍력발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액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현재 상황에서 사업자도 수용하기 쉬운 **초과이익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함
  - 매출액 비율을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이익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이익의 배분을 통해 추가적인 이익공유액을 확보함
  
- 매출액에 적용할 비율이 높을수록 초과이익기준에 적용할 요구수익률도 높고, 매출액에 적용할 비율이 낮을수록 초과이익기준에 적용할 요구수익률도 낮음
  - 매출액기준에 따른 이익공유액과 초과이익(실제이익 - 투자자본×요구수익률)에 대해 배분되는 이익공유액을 적정한 비율로 구성함

(예시)

  - 매출액 비율: 7% → 요구수익률: 6.5% → 초과이익 배분비율: 15%
  - 매출액 비율: 6% → 요구수익률: 6% → 초과이익 배분비율: 30%
  - **매출액 비율: 5% → 요구수익률: 5% → 초과이익 배분비율: 30%**
  - 매출액 비율: 4% → 요구수익률: 4.5% → 초과이익 배분비율: 35%
  
- **매출액비율은 5%하고, 요구수익률은 5%하며, 초과이익배분율은 30%가 적정하다고 판단됨**
  - 공공의 자산인 풍력과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해상풍력발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액 비율을 5% 수준으로 함
  - 매출액 비율이 낮고 초과이익 배분비율이 높을 경우 풍력발전사업자가 경제성 측면을 고려한 사업 운영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 이익공유화 금액은 크게 작아 질 수 있어 적정한 수준의 매출액비율이 필요함
  - 내부수익률(IRR)이 최소 6% 정도는 되어야 제주해상풍력의 사업타당

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매출액 비율 5%를 적용할 경우 내부수익률(IRR)과 자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하다고 판단됨

- 매출액 비율 5% 적용의 경우 차입금 조달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차입금 조달의 어려움과 안정적인 자금운용의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은 이익공유화 때문이 아니라 영업위험이 큰 해상풍력발전사업(SMP와 REC 가격의 변동 폭이 커서 수익성이 크게 변동하고, 비슷한 자연환경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음)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고려하여 납입자본에 4배에 이르는 차입금을 조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됨(정부의 공기업 부채비율 억제정책과 민간 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200% 이하 정책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영업위험이 높은 사업에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재무위험이 가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대해서는 3.3절의 <표 3-2>와 <표 3-3>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함)

※ 전기사업 허가 시 재무능력의 심사기준은 투자의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고,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임** (영업위험이 큰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 SPC의 부채비율이 400%일 경우 현실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하다고 보기 어려움)

### 3.3 이익공유화 방안의 구체적 기준과 영향 분석

- 해상풍력 이익공유화 방안으로 매출액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이익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했을 때 재무비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가 <표 3-1>에 나타나 있음

<표 3-1> 이익공유화에 따른 재무비율 변화 분석

(104MW 기준, 단위: 백만원)

IRR	매출기준 부담률	0%	3%	4%	5%	6%	7%	8%
8%	IRR 변화	8%	7.58%	7.44%	7.30%	7.16%	7.02%	6.88%
	매출기준 공유액	0	2,666	3,554	4,443	5,331	6,220	7,109
	공유액/영업이익	0	4.9%	6.6%	8.3%	10.0%	11.7%	13.4%
	공유액/잉여현금	0	3.3%	4.4%	5.5%	6.5%	7.6%	8.7%
	납입자본순이익률	20.1%	18.5%	17.9%	17.4%	16.9%	16.3%	15.8%
	(요구수익률, 이익배분 비율)		(4.0%, 38%)	(4.5%, 35%)	(5%, 30%)	(6%, 30%)	(6.5%, 15%)	
	초과이익 공유액	0	6,379	5,013	3,562	2,511	1,043	0
	총공유액	0	9,045	8,567	8,005	7,843	7,263	7,109
7%	IRR 변화	7%	6.60%	6.46%	6.33%	6.19%	6.05%	5.91%
	매출기준 공유액	0	2,475	3,300	4,125	4,950	5,775	6,600
	공유액/영업이익	0	5.4%	7.2%	9.0%	10.9%	12.7%	14.6%
	공유액/잉여현금	0	3.3%	4.4%	5.5%	6.6%	7.7%	8.8%
	납입자본순이익률	16.3%	14.8%	14.3%	13.8%	13.3%	12.8%	12.3%
	(요구수익률, 이익배분 비율)		(4.0%, 38%)	(4.5%, 35%)	(5%, 30%)	(6%, 30%)	(6.5%, 15%)	
	초과이익 공유액	0	4,692	3,492	2,369	1,689	697	0
	총공유액	0	7,167	6,792	6,494	6,639	6,472	6,600
6%	IRR 변화	6%	5.61%	5.48%	5.35%	5.21%	5.08%	4.94%
	매출기준 공유액	0	2,292	3,056	3,820	4,585	5,349	6,113
	공유액/영업이익	0	6.0%	8.0%	10.0%	12.1%	14.2%	16.3%
	공유액/잉여현금	0	3.3%	4.4%	5.5%	6.6%	7.8%	8.9%
	납입자본순이익률	12.6%	11.2%	10.8%	10.3%	9.9%	9.4%	8.9%
	(요구수익률, 이익배분 비율)		(4.0%, 38%)	(4.5%, 35%)	(5%, 30%)	(6%, 30%)	(6.5%, 15%)	
	초과이익 공유액	0	3,077	2,220	1,515	1,058	419	0
	총공유액	0	5,369	5,276	5,336	5,643	5,768	6,113
총공유액/매출액	0	7.0%	6.9%	7.0%	7.4%	7.5%	8.0%	

- \* 이익 공유액, 영업이익, 잉여현금흐름, 납입자본순이익률: 연평균
  - \* 잉여현금흐름(FCF) =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 자본적 지출액
  - \* 총공유액 = 매출기준 공유액 + 초과이익 공유액
  - \* 매출기준 공유액 = 매출액 × 매출기준 부담률
  - \* 정상이익 = (차입금 + 납입자본금 + 이익유보금 일부) × 요구수익률  
이익유보금: 당기순이익 × 20% 적립을 가정함
  - \* 초과이익 = 세후 영업이익 - 정상이익
  - \* 초과이익 공유액 = 초과이익 × 이익배분 비율
  - \* 납입자본순이익률 = 당기순이익/납입자본금(납입자본의 4배로 차입금을 조달한 경우)
- 내부수익률(IRR)은 7%를 기본으로 하여 상하 1%인 8%와 6%를 제시하였고, 매출액에 곱하여 이익공유액을 산출하는 매출액기준 부담률은 3%에서 8%를 제시함
- 설비용량 104MW 기준(이하 같음)으로 내부수익률이 7%일 때 매출액기준 부담률 5%를 적용할 경우 연평균 이익공유액은 4,125백만원으로 추정되며, 매출액기준 부담률 1%가 변함에 따라 825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함
- 매출액기준 부담률 5%를 적용할 경우 IRR은 당초 7%에서 6.33%로 0.67%p 하락하며, 할인을 5%를 적용했을 때 회사가 실질적으로 부담(법인세 공제효과 차감 후)하는 20년간 이익공유액의 현재가치(PV)는 358억원으로 해당 해상풍력사업의 순현재가치(NPV) 1,033억원의 35%임
  - \* IRR이 8%인 경우에는 20년간 이익공유액의 현재가치는 386억원으로 해당 해상풍력사업의 순현재가치 1,585억원의 24%임
  - \* 해상풍력사업의 순현재가치(NPV)는 사업에서 벌어들인 잉여현금흐름(FCF)에서 자금투자자(주주와 자금대여자)의 요구수익률(할인율, 본 분석에서는 5%)을 공제한 후의 가치임
- 매출액기준 부담률 5%를 적용할 경우 IRR이 7%에서 6.33%로 하락하는 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SMP가 약 14원/kWh 하락하거나 REC가 약 7원/kWh 하락하는 효과와 같음

- 중앙정부의 제주REC정책과 비교: 이익공유에 따른 수익성 악화효과는 제주SMP와 육지SMP 차이만큼 제주REC에 대해 할인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수익성 악화 효과(REC 20원/kWh 하락,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제주SMP와 육지SMP 차이 44원/kWh×0.9÷해상풍력 가중치 2)와 비교하여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제도 개선으로 REC 20원/kWh 상승 시 IRR은 1.87%p 상승한 8.87%임)
  - 육지와 비교: 육지에는 없는 풍력 개발이익 공유화에 따라 IRR이 0.67%p 하락하는 효과는 제주지역의 해상풍력 MW당 전력 생산량이 육지에 비해 5% 높은 것과 상쇄됨
  - 풍력 터빈에 따른 이용률 차이와 비교: 제주 ××해상풍력발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효율성이 좋은 A풍력터빈을 설치할 경우 IRR은 7.16%, D풍력터빈은 5.26%, F풍력터빈은 4.74%으로 나타났는데(한국경제, 2018.11.23.), 정책적 목적에 따라 A풍력터빈이 아닌 D 또는 F풍력터빈을 설치할 경우 IRR이 1.9%p 또는 2.42%p 하락함
- 레버리지 효과(차입금이 납입자본의 4배)에 따라 IRR이 7%일 경우 납입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납입자본금)은 연평균 16.3%로 나타났으며, 매출액기준 부담률 5%를 적용할 경우 납입자본순이익률은 2.5%p 하락한 13.8%이나 우리나라 상장기업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임(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코스피 기업 평균 ROE(당기순이익/자기자본): 5%, 한국금융, 2018.11.30.)
- IRR이 6%일 때 매출액기준 부담률 5%를 적용할 경우 납입자본순이익률은 2.3%p 하락한 10.3%로 양호한 수준이며, IRR이 8%일 때 매출액기준 부담률 5%를 적용할 경우 납입자본순이익률은 17.4%로 상당히 높음
- 내부수익률(IRR)이 7%일 때 매출액기준 부담률 5%를 적용할 경우 연평균 이익공유액은 4,125백만원으로 세후기준으로 볼 때 잉여현금흐름(FCF; Free Cash Flow)의 5.5%이며, IRR이 각각 6%와 8%일 때 매출액

기준 부담률 5%를 적용할 경우 연평균 이익공유액은 FCF의 5.5%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에서 자본적 지출액을 차감한 잉여현금흐름(FCF)은 차입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함

- IRR이 각각 6%, 7%, 8%일 때 연평균 FCF(매출액기준 부담률 5%를 적용할 경우의 기부금 공제 전)는 각각 538억원, 586억원, 635억원으로 총투자금의 9%에서 11% 수준이며, 투자금의 평균회수기간이 10년 정도임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IRR이 6%에서 8%에서는 매출액기준 부담률 5%를 적용할 경우의 기부금(연평균 38억원에서 44억원)을 지급하고, 투자자에게 차입금 원금 및 이자와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충분한 수준의 잉여현금흐름(FCF)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됨

\* 납입자본이 6,500억원일 경우 연평균으로 볼 때, 매출기준 5%의 기부금과 5%(2017년 코스피의 평균 시가배당률 1.86%의 2.5배 이상)의 배당금 300억원을 지급하고도 183억원에서 276억원의 여유자금이 매년 추가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예측됨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상풍력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기본: 매출액 × 5%

- 추가: 초과이익 × 30%

\* 초과이익 = 세후 영업이익 - 정상이익

세후 영업이익 = 영업이익(해당연도 매출액기준 기부금은 영업비용에 포함함) × (1 - 해당연도 법인세율)

정상이익 = 투자금액(= 차입금 + 납입자본금 + 이익유보금) × 5%  
차입금, 납입자본금: 해당연도 가중평균 잔액



이익유보금: 당기순이익 × 20% 누적금액(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기순손실 × 20% 차감)

※ 내부수익률(IRR)이 8%이고 납입자본의 4배로 차입금을 조달한 때에는 레버리지 효과에 따라 이익공유한 후의 납입자본순이익률이 15.3%(IRR 9%, 10%일 경우 각각 18.2%, 21.3%)에 달하므로, IRR이 8%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이익의 30%로 이익공유한 후에도 과도한 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지분율에 따라 초과이익 배분비율을 30%보다 높은 비율로 각각 조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IRR이 각각 6%, 7%, 8%일 때 매출액기준 부담률 5%를 적용할 경우의 초과이익 공유액은 각각 1,515백만원, 2,369백만원, 3,562백만원임
- IRR이 각각 6%, 7%, 8%일 때 매출액기준(매출액×5%)과 초과이익기준(초과이익×30%)을 합한 총 기부금은 5,336백만원, 6,494백만원, 8,005백만원으로 각각 연평균 매출액의 7.0%, 7.9%, 9.0%임
- 풍력시설 운영상의 불확실성이 높고 SMP와 REC 가격의 변동 폭이 커서 **영업위험**이 높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금을 과도하게 차입에 의존할 경우 **재무위험**이 추가되어 **총사업위험**이 매우 높아질 수 있음
- 다음 <표 3-2>와 <표 3-3>은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납입자본과 동일한 금액을 차입하는 경우와 납입자본의 4배에 이르는 차입을 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풍력발전 개시 1차년도 부터 6차년도 까지 추정 자금흐름 분석을 실시함
  - 투자자금은 6,500억원이고, 차입이자율 4.5%이고, 각 연도 말에 원금상환과 이자지급 및 해당연도의 이익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며, 원금은 4년 거치 12년 균등상환을 가정함

&lt;표 3-2&gt; 자금흐름 분석(납입자본 만큼 차입한 경우)

(104MW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내부수익률(IRR)									
		4%		5%		6%		6.5%		7%	
		1차 연도	2차 연도	1차 연도	2차 연도	1차 연도	2차 연도	1차 연도	2차 연도	1차 연도	2차 연도
유입(A)	잉여현금흐름	496	486	543	532	592	580	617	604	644	630
유출(B)	이익공유액	(35)	(34)	(38)	(37)	(42)	(40)	(43)	(42)	(45)	(44)
	차입 이자	(146)	(146)	(146)	(146)	(146)	(146)	(146)	(146)	(146)	(146)
	세금절감효과	40	40	41	40	41	41	42	41	42	42
	배당금 (배당수익률)	(195) 6%	(195) 6%	(228) 7%	(228) 7%	(260) 8%	(293) 9%	(293) 9%	(325) 10%	(325) 10%	(325) 10%
현금 증가(C=A-B)		159	151	171	161	185	142	177	133	170	157
기초 현금(D)		100	259	100	271	100	285	100	277	100	270
기말 현금(E=C+D)		259	410	271	432	285	427	277	410	270	426
이익공유액(세후)/배당금		14%	14%	13%	13%	12%	11%	12%	10%	11%	10%
구 분		3차 연도	4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유입(A)	잉여현금흐름	486	497	532	540	580	584	605	608	631	632
유출(B)	이익공유액	(35)	(34)	(38)	(37)	(41)	(40)	(42)	(41)	(44)	(43)
	차입 원금	(271)	(271)	(271)	(271)	(271)	(271)	(271)	(271)	(271)	(271)
	차입 이자	(146)	(134)	(146)	(134)	(146)	(134)	(146)	(134)	(146)	(134)
	세금절감효과	40	37	40	38	41	38	41	39	42	39
배당금 (배당수익률)		(65) 2%	(98) 3%	(130) 4%	(130) 4%	(163) 5%	(195) 6%	(195) 6%	(195) 6%	(228) 7%	(228) 7%
현금 증감(C=A-B)		9	(3)	(12)	5	1	(17)	(8)	5	(16)	(5)
기초 현금(D)		410	419	432	420	427	428	410	402	426	411
기말 현금(E=C+D)		419	416	420	426	428	411	402	407	411	406
이익공유액(세후)/배당금		42%	27%	23%	22%	20%	16%	17%	17%	15%	15%
구 분		5차 연도	6차 연도	5차 연도	6차 연도	5차 연도	6차 연도	5차 연도	6차 연도	5차 연도	6차 연도
유입(A)	잉여현금흐름	461	467	505	511	551	558	574	582	599	606
유출(B)	이익공유액	(33)	(33)	(36)	(36)	(39)	(39)	(40)	(42)	(42)	(50)
	차입 원금	(271)	(271)	(271)	(271)	(271)	(271)	(271)	(271)	(271)	(271)
	차입 이자	(122)	(110)	(122)	(110)	(122)	(110)	(122)	(110)	(122)	(110)
	세금절감효과	34	31	35	32	35	33	36	33	36	35
배당금 (배당수익률)		(65) 2%	(98) 3%	(130) 4%	(130) 4%	(163) 5%	(163) 5%	(163) 5%	(195) 6%	(195) 6%	(228) 7%
현금 증감(C=A-B)		4	(13)	(19)	(4)	(8)	8	15	(2)	5	(17)
기초 현금(D)		416	420	426	406	411	403	407	422	406	411
기말 현금(E=C+D)		420	407	406	403	403	412	422	420	411	394
이익공유액(세후)/배당금		40%	27%	22%	22%	19%	19%	19%	17%	17%	17%

<표 3-3> 자금흐름 분석(차입금이 납입자본의 4배인 경우)

(104MW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내부수익률(IRR)									
		4%		5%		6%		6.5%		7%	
		1차 연도	2차 연도	1차 연도	2차 연도	1차 연도	2차 연도	1차 연도	2차 연도	1차 연도	2차 연도
유입(A)	잉여현금흐름	496	486	543	532	592	580	617	604	644	630
유출(B)	이익공유액	(35)	(34)	(38)	(37)	(42)	(40)	(43)	(42)	(45)	(44)
	차입 이자	(234)	(234)	(234)	(234)	(234)	(234)	(234)	(234)	(234)	(234)
	세금절감효과	59	59	60	60	61	60	61	61	61	61
	배당금 (배당수익률)					(39) 3%	(39) 3%	(65) 5%	(65) 5%	(91) 7%	(91) 7%
현금 증가(C=A-B)		286	277	330	320	338	327	336	324	335	322
기초 현금(D)		100	386	100	430	100	438	100	436	100	435
기말 현금(E=C+D)		386	663	430	751	438	765	436	761	435	757
이익공유액(세후)/배당금						83%	81%	52%	50%	38%	37%
구 분		3차 연도	4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유입(A)	잉여현금흐름	486	497	532	540	580	584	605	608	631	632
유출(B)	이익공유액	(35)	(34)	(38)	(37)	(41)	(40)	(42)	(41)	(44)	(43)
	차입 원금	(433)	(433)	(433)	(433)	(433)	(433)	(433)	(433)	(433)	(433)
	차입 이자	(234)	(215)	(234)	(215)	(234)	(215)	(234)	(215)	(234)	(215)
	세금절감효과	59	55	60	55	60	56	61	56	61	57
	배당금 (배당수익률)					(39) 3%	(39) 3%	(65) 5%	(52) 4%	(78) 6%	(78) 6%
현금 감소(C=A-B)		(157)	(130)	(113)	(90)	(106)	(86)	(108)	(77)	(97)	(81)
기초 현금(D)		663	506	751	637	765	659	761	652	757	660
기말 현금(E=C+D)		506	376	637	548	659	572	652	575	660	580
이익공유액(세후)/배당금						81%	80%	51%	62%	44%	43%
구 분		5차 연도	6차 연도	5차 연도	6차 연도	5차 연도	6차 연도	5차 연도	6차 연도	5차 연도	6차 연도
유입(A)	잉여현금흐름	461	467	505	511	551	558	574	582	599	606
유출(B)	이익공유액	(33)	(33)	(36)	(36)	(39)	(39)	(40)	(43)	(42)	(51)
	차입 원금	(433)	(433)	(433)	(433)	(433)	(433)	(433)	(433)	(433)	(433)
	차입 이자	(195)	(176)	(195)	(176)	(195)	(176)	(195)	(176)	(195)	(176)
	세금절감효과	50	46	51	47	51	47	52	48	52	50
	배당금 (배당수익률)					(26) 2%	(26) 2%	(52) 4%	(52) 4%	(78) 6%	(78) 6%
현금 감소(C=A-B)		(150)	(129)	(109)	(87)	(91)	(69)	(94)	(74)	(97)	(82)
기초 현금(D)		376	225	548	439	572	481	575	481	580	482
기말 현금(E=C+D)		225	96	439	351	481	412	481	407	482	401
이익공유액(세후)/배당금						116%	118%	61%	43%	42%	51%

- 납입자본과 차입금을 동일한 비율로 투자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는 매년 발생하는 잉여현금흐름(FCF)으로 이익공유에 따른 기부금과 차입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데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IRR이 5% 이하인 상황에서도 배당금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표 3-2>를 통해 할 수 있음
- IRR 7%인 때에는 차입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1차 및 2차 연도의 경우 배당수익률(배당금/납입자본금)은 10%이고, 세금효과를 반영한 이익공유액과 배당금의 비율이 각각 11%와 10%임
  - IRR 7%인 때에는 차입 원금을 상환하는 3차 연도부터 6차 연도까지의 배당수익률(배당금/납입자본금)은 6%~7%이고, 세금효과를 반영한 이익공유액과 배당금의 비율이 15%~17%임
  - 차입 원금을 매년 271억원씩 분할하여 상환함에 따라 7차 연도 98억 원에서 14차 연도 12억까지 이자지급액이 매년 점차 감소하며, 원금이 모두 상환되는 15차 연도부터 20차 연도까지 6년간은 차입 원금 및 이자지급액이 없으므로 매년 평균적으로 잉여현금흐름 591억 원에서 세금효과를 공제한 후의 이익공유액 63억 원을 차감한 528억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배당금/납입자본금 = 16.2%)
  - <표 3-4>에서는 차입 원금이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14차 연도와 차입금이 없는 15차 연도의 자금흐름을 보여주고 있음

<표 3-4> 차입원금 상환 전·후 자금흐름 분석(납입자본 만큼 차입한 경우)

(104MW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내부수익률(IRR)									
		4%		5%		6%		6.5%		7%	
		14차 연도	15차 연도	14차 연도	15차 연도	14차 연도	15차 연도	14차 연도	15차 연도	14차 연도	15차 연도
유입(A)	잉여현금흐름	436	438	477	480	522	524	544	547	568	570
유출(B)	이익공유액	(43)	(43)	(56)	(56)	(70)	(70)	(77)	(77)	(84)	(84)
	차입 원금*	(271)		(271)		(271)		(271)		(271)	
	차입 이자*	(12)		(12)		(12)		(12)		(12)	
	세금절감효과	12	10	15	12	18	15	18	18	21	18
	배당금 (배당수익률)	(293) 9%	(423) 13%	(325) 10%	(455) 14%	(358) 11%	(488) 15%	(390) 12%	(488) 15%	(390) 12%	(520) 16%
현금 감소(C=A-B)		(171)	(18)	(172)	(19)	(171)	(18)	(187)	0	(168)	(15)
기초 현금(D)		300	129	300	128	300	129	300	113	300	132
기말 현금(E=C+D)		129	111	128	109	129	111	113	113	132	116
이익공유액(세후)/배당금		11%	8%	13%	10%	15%	11%	15%	12%	17%	13%

\* 납입자본의 4배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14차 연도의 차입 원금과 이자는 각각 433억원과 19.5억원임

○ <표 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납입자본의 4배를 차입한 경우 내부수익률(IRR)이 낮은 때에는 차입 원금 및 이자 지급 부담이 커서 보다 신중한 자금운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IRR이 4%와 5%인 경우에는 원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까지는 배당금 지급이 어렵고, 특히 IRR이 4%인 상황에서는 7차 연도부터 차입 원금 및 이자 지급에 사용될 잉여현금흐름(FCF)이 부족하여 추가로 차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추정됨
- 납입자본의 4배를 차입한 경우에는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대부분이 차입 원금 및 이자 지급에 사용되고, IRR이 7%인 상황에서는 1차 연도부터 6차 연도까지 레버리지 효과에 따라 납입자본의 6~7% 정도의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 <표 3-2>와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연도별 매출액기준과 초과이익기준에 따른 이익공유액의 합계액은 해당 연도의 잉여현금흐름(FCF)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이익공유액이 자금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수익성 악화 시 자금운용이 어려워지는 주된 요인은 납입자본 대비 과도한 차입에 따른 차입금 원금과 이자 지급인 것을 알 수 있음
- <표 3-2>와 <표 3-3>의 분석결과는 영업위험이 높은(잉여현금흐름의 변동성이 큰) 해상풍력발전 사업에서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재무위험이 가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재무능력의 심사기준은 투자의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고,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임
  - 영업위험이 큰 해상풍력발전사업(SMP와 REC 가격의 변동 폭이 커서 수익성이 크게 변동하고, 비슷한 자연환경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음)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부채비율이 400%일 경우 재무위험이 가중되어 해당 SPC는 현실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이와 관련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서남해안 2.5GW 해상풍력사업의 실증(60MW)·시범(400MW)단지 사업주체로서 한국전력과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발전 6사가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해상풍력(주)가 실증단지에서의 발전 사업에 자기자본과 차입금을 동일한 비율로 자금을 조달하는 계획을 세운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 동 실증단지 사업에는 3MW의 국산 풍력터빈 20개가 설치되어 총 60MW가 발전용량이며, 사업비가 변동됨에 따라 실제의 자본금과 차입금은 각각 2,128억원과 2,445억원임



# IV. 이익공유화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방안

---

4.1 이익공유화 업무 프로세스	83
4.2 이익공유액 산정 과정	83
4.3 이익공유액 산정 검토보고서	83
4.4 이익공유화 시스템 구축	83





## IV. 이익공유화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방안

### 4.1 이익공유화 업무 프로세스

이익공유화 담당 공무원의 업무 프로세스와 업무수행 시 참조할 매뉴얼  
(이익공유화 담당 업무 매뉴얼 별도로 작성)

### 4.2 이익공유액 산정 과정

이익공유액 산정 자료와 자료 작성 방법  
이익공유액 산정 방법  
(이익공유화 금액 산정 매뉴얼 별도로 작성)

### 4.3 이익공유액 산정 검토보고서

공인회계사 등이 이익공유액 산정의 적정성 검토 시 유의사항과 검토보고서  
작성 요령  
(이익공유액 산정 검토와 검토보고서 작성 매뉴얼 별도로 작성)

### 4.4 이익공유화 시스템 구축

- 기부금 납부와 정산 및 기금에 편입되는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이익공유화 업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이익공유화 담당 공무원
  - 전산화 시스템에 따른 일정 관리 및 전반적인 관리 및 통제

○ 발전사업자

- 이익공유화 관련 자료의 작성과 제출
- 이익공유화 정산과정에 수정 및 추가 자료 제출
- 이익공유화 정산 내용 확인

○ 정산 용역 수행자

- 이익공유화 관련 자료와 보고서 검토
- 이익공유화 정산 확인
- 이익공유화 정산 보고서 발행

# 부 록

부록 1: 용어 정의	87
부록 2: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2014. 4.)	93
부록 3: 육상풍력발전사업에 관한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현행 기본)	114
부록 4: 해상풍력발전사업에 관한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표준 안)	117



## 부록 1: 용어 정의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재평가한 경우 재평가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한 금액이다.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 상으로는 풍력발전지구에 위치한 발전설비 및 해당 전력계통연계 시설의 감가상각대상 금액에 대해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출한다.
- 계통한계가격(SMP): 거래시간별로 일반발전기(원자력, 석탄 외의 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해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원/kWh)
- 고정가격계약: REC 거래 계약 시 REC 가격에 SMP를 합산한 가격을 고정가격으로 하는 계약
- 기대수익률: 요구수익률. 투자자가 해당 투자에 대해 기대하는 수익률
- 납입자본금: 주주가 회사에 납입한 금액으로,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납입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 ÷ 납입자본금
-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투자로부터 얻게 될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와 투자로부터 지출될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같게 하는 할인율이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의 내부수익률이 8%라면 이것은 투자의 원금이 내용연수까지 계속 8%의 복리로 성장하는 자본의 복리증가율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sum_{t=0}^n \frac{CI_t}{(1+r)^t} = \sum_{t=0}^n \frac{CO_t}{(1+r)^t} \quad \text{또는} \quad \sum_{t=0}^n \frac{CI_t}{(1+r)^t} - \sum_{t=0}^n \frac{CO_t}{(1+r)^t} = 0$$

여기서,  $CI_t$  : t기의 현금유입액

$CO_t$  : t기의 현금유출액

$r$  : 내부수익률(IRR)

- 당기순손실: 당기순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 영업외 수익 - 영업외비용 - 법인세비용이다. 당기순이익이 음수(-)로 산출될 때 당기순손실이라 한다.
- 당기순이익: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의 최종 수치로,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에 대체된다. 당기순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법인세비용
- 레버리지 효과: 이익의 변동성이 커지는 효과로, 재무레버리지 효과는 자본에 비해 차입금이 클수록 타인자본이 지렛대처럼 작용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의 변동이 확대되는 효과이다.
- 매출액: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풍력발전회사의 경우 전력판매수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입으로 구성된다.
- 매출액기준 환산율: 확정기부금을 산출할 때 매출액에 곱하는 비율이다.  
 $\text{표준 매출액} \times \text{X(매출액기준 환산율)} = \text{표준 당기순이익} \times 17.5\%$ 이고,  
 $\text{X(매출액기준 환산율)} = \text{표준 당기순이익} \times 17.5\% \div \text{표준 매출액}$ 이다.
- 법인세비용: 법인세 납부로 인한 비용이다. 표준 손익계산서의 경우 법인세비용 = 세전순이익 × 세율(세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세법상의 세율)이다.
- 비용: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자본) 감소액으로, 기타포괄손실을 제외한 비용은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다.
- 부채: 과거 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기업의 현재 의무
- 부채비율: 부채 ÷ 자본으로,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총자본 중 자기자본 보다 타인자본(차입금)의 비중이 크다.
- 선기부금: 육상풍력 이익공유화의 원칙으로, 매출액×7%를 각 회계연도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납한다. 선기부금은 3년 주기로 매출액기준 환산율로 정산한다.

- 세전순이익: 표준 손익계산서에서 세전순이익 = 매출액 - [감가상각비 + 유지보수비 + 인건비 + 지급임차료 + 순이자비용 + 기부금 + 기타]이다.  
세전순이익 - 법인세비용 = 당기순이익이다.
- 세후 영업이익: 영업이익 × (1 - 세율)
- 수익: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자본) 증가액으로, 기타포괄이익을 제외한 수익은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킨다.
- 수익적 지출: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 중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로 유형자산 증가가 아닌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지출
- 손익계산서: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고서로, 매출액에서 시작하여 최종 수치인 당기순이익(또는 순손실)이 산출된다. 당기순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법인세비용
- 순이자비용: 이자비용 - 이자수익
-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투자로부터 얻게 될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PV)에서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가치
 
$$NPV = \sum_{t=1}^n \frac{CI_t}{(1+r)^t} - \sum_{t=0}^n \frac{CO_t}{(1+r)^t}$$
 여기서,  $CI_t$  : t기의 현금유입액  
 $CO_t$  : t기의 현금유출액  
 $r$  : 자본비용(할인율)
- 시가배당률: 배당금 ÷ 주가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했다는 증명서로, 인증기관이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발전량을 검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발전량에 따라 발급한다.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영업이익: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 요구수익률(Required Rate of Return): 투자자(주주와 자금대여자)가 해당 투자에 대해 바라는 수익률로, 필수수익률 또는 기대수익률이라고도 한다.
- 유지관리: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
- 유지보수비: 시설의 상태를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하고 낡거나 부서진 것을 고치는데 들어간 금액이다.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에 따른 유지보수비는 풍력발전지구에 위치한 발전설비 및 해당 전력계통연계 시설의 유지보수비(해당 설비와 시설에 대한 수익적 지출액)가 해당된다.
- 이월결손금: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적자)
- 이익유보금: 당기순이익의 누적액 중 미배당액
-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을 차감한 후 기업 내부에 누적된 이익으로 배당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따라야 할 회계기준
- 잉여현금흐름(FCF: Free Cash Flow):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에서 자본적 지출액(영업 채투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잉여현금흐름으로 자금투자자인 채권자와 주주에게 차입원금과 이자 및 배당금을 지급한다.

- 자기자본순이익률(ROE: Return on Equity):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 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 지분(주주의 몫)
-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 중 당해 자산의 증가로 회계처리하는 지출
- 자산: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
- 재무상태표: 일정시점의 재무상태(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표
- 정상이익 = 투자 자본 × 투자자본 요구수익률
- 초과이익: 정상이익을 초과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초과이익 = 세후 영업이익 - 정상이익(= 투자 자본 × 투자자본 요구수익률)
- 총투자수익률: 세후 영업이익 ÷ 총투자금액(= 부채 + 자본)
- 표준 당기순이익: 표준 손익계산서에서 산출된 당기순이익
- 표준 매출액: 표준 손익계산서에서 산출된 매출액
- 표준 손익계산서: 표준 당기순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표이다. 확정기부금을 산출할 때 매출액에 곱하는 비율을 매출액기준 환산율이라 하고, 표준 매출액 × X(매출액기준 환산율) = 표준 당기순이익 × 17.5%이다. 표준 매출액과 표준 당기순이익은 각각 표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다. 표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 = 매출액 - (감가상각비 + 유지보수비 + 인건비 + 지급임차료 + 순이자비용 + 기부금 + 기타) - 법인세비용이다. 표준 손익계산서 작성 방법은 <표 2-3>에 나타나 있다.
- 필수수익률: 요구수익률
- 확정기부금: 매출액 × 매출액기준 환산율

- FCF: Free Cash Flow의 약어로, 잉여현금흐름으로 번역한다.
- IRR: Internal Rate of Return의 약어로, 내부수익률로 번역한다.
- NPV: Net Present Value의 약어로, 순현재가치로 번역한다.
- O&M: Operations & maintenance의 약자로,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또는 운영유지비로 번역한다.
-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약자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번역한다.
- ROE: Return on Equity의 약어로, 자기자본순이익률로 번역한다.
- 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약어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SMP: System Marginal Price의 약자로, ‘계통한계가격’으로 번역한다.

## 부록 2: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발체) (제주특별자치도, 2014. 4.)

### 2.2 이익공유 방안 검토

#### 2.2.1 이익공유 방법 장·단점 검토 (생략)

#### 2.2.2 이익공유 방안

##### (1) 초과이익 기준에 따른 이익공유 방안

- <표 2-6>(다음 <표 2-11>과 같음)의 표준 추정 손익계산서로 산정할 경우 당기순이익의 17.5%에 상응하는 금액은 초과이익 기준으로는 ‘**초과이익의 28.4%**’임
  - ‘**초과이익의 28.4%**’를 이익공유 목적으로 기부할 경우 이는 당기순이익의 17.5%에 상응하는 기부금으로 판단됨
  - 초과이익 = 실제 이익 - 정상이익(= 투자 자본 × 투자자본 요구수익률)
    - \* 실제 이익 = 세후 영업이익 = 영업이익 × (1 - 세율)
    - \* 투자 자본 = 영업기간 평균 투자액 = 초기 투자액 ÷ 2
    - \* 투자자본 요구수익률 = 10%
  
- 각 상황에 따른 당기순이익의 17.5%에 상당하는 초과이익의 일정률은 <표 2-9>와 같음
  
- 적용 방법
  - 비용은 <표 2-6>(다음 <표 2-11>과 같음)의 표준비용을 적용함

<표 2-9> 초과이익 기준에 따른 이익공유 방안

(30MW 기준)

이익공유 기준	기부 비율 또는 정상이익 산출방법	기부 금액 또는 초과이익 비율		
		낙관적(기력 추가, SMP 상승: 2.5%, REC=100원)	중립적(기력 추가, SMP 상승: 2.5%, REC=50원)	보수적(LNG 추가, SMP 상승: 1%, REC=50원)
당기순이익	17.5%	394억원	300억원	192억원
초과이익	초기투자액 12%	82.20%	136억원	0
	장부상투자액 12%	28.20%	34.50%	69.30%
	평균투자액 12%	27.40%	35.00%	70.20%
	장부상투자액 10%	25.20%	29.30%	47.00%
	평균투자액 10%	24.70%	28.40%	44.10%

- 실제 발생한 유지보수비가 <표 2-6>(다음 <표 2-11>과 같음)의 표준비용보다 현저하게 변동한 경우 초과이익의 산정에 있어 합의에 의해 유지보수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매출액은 전력판매수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가격 등 해당 육상풍력발전지구에서의 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당기에 발생한 모든 영업수익을 포함함

\*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자인 발전사업자가 풍력발전량을 당해 의무량에 포함시킴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판매되지 않은 REC에 연간 단위당 평균가격(<표 2-2>의 육상풍력발전지구 발전사업자 중 REC 판매수입이 있는 사업자의 해당 연도 REC 판매수입의 합계액을 REC 판매량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을 곱한 금액을 매출액에 포함함

- 매출액의 측정과 기간귀속 등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름

(2) 매출액 기준에 따른 이익공유 방안

- <표 2-6>(다음 <표 2-11>과 같음)의 표준 추정 손익계산서로 산정할 경우 당기순이익의 17.5%에 상응하는 금액은 매출액 기준으로는 '당기 매출액의 7.0%'임
  - '당기 매출액의 7.0%'를 이익공유 목적으로 기부할 경우 이는 당기순이익의 17.5%에 상응하는 기부금으로 판단됨
- 각 상황에 따른 당기순이익의 17.5%에 상당하는 매출액의 일정률은 <표 2-10>과 같음

<표 2-10> 매출액 기준에 따른 이익공유 방안

(단위 : 억원, 30MW 기준)

이익공유 기준	기부 비율	기부 금액		
		낙관적(기력 추가, SMP 상승: 2.5%, REC=100원)	중립적(기력 추가, SMP 상승: 2.5%, REC=50원)	보수적(LNG 추가, SMP 상승: 1%, REC=50원)
당기순이익	17.50%	394	300	192
매출액	7.80%	392	331	262
	7.00%	352	297	235
	5.70%	286	242	191

- 적용 방법
  - 매출액의 측정과 기간귀속은 '(1) 초과이익 기준에 따른 이익공유 방안' 과 같음
  - 영업이익(세후)이 평균 투자금액 × 8% 이하일 경우 해당 연도의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함

## 2.3 매출액 기준 환산율 산정

- 본 절에서는 2.2절에서 설명한 이익공유방안 중 매출액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표준 추정손익계산서에 의해 산출된 매출액의 일정률 즉, 매출액의 “7%”로 확정하지 않고 추정된 표준 매출액과 표준 비용이 아닌 향후에 실제 발생한 매출액과 비용(일부 비용은 표준비용 적용)을 반영하여 매출액 비율을 조정할 경우 당해 일정률(이를 ‘매출액 기준 환산율’이라 함)의 산정방법과 이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함
  -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은 2.2절에서 매출액의 7%를 산출할 때 추정된 표준(평균) 매출액과 표준(평균)비용 대신 실제 평균매출액과 실제 평균비용을 반영하여 매출액의 일정율을 재산정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개별 발전회사의 매출액과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의 17.5%와 같아지는 매출액 기준 환산율을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님
  - 개별 발전회사의 매출액과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의 17.5%와 같아지는 매출액 기준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결국 당기순이익의 17.5% 기준과 같은 것으로서, 이와 같이 당기순이익 기준을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2.2절에서 설명함

### 2.3.1 표준 추정 손익계산서

- 개발이익 공유에 따른 기부금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30MW 발전설비 기준 연도별 표준 추정 손익계산서는 2.1절의 <표 2-6>에 제시한 바와 같이 <표 2-11>에 나타나 있음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표 2-11>의 표준 추정 손익계산서는 가시리 풍력발전지구, 김녕 풍력발전지구, 상명 풍력발전지구 및 어음 풍력발전지구에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해당 사업자들의 30MW 발전설비 기준 연도별 평균적인 수익과 비용을 추정함

&lt;표 2-11&gt; 표준 추정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 출 액	18,171	18,524	18,960	16,795	17,428	18,053	18,712
감가상각비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유지보수비	1,244	1,281	1,319	1,359	1,400	1,844	1,899
인건비	600	630	662	695	730	767	805
지급임차료	600	600	600	600	600	600	600
순이자비용	3,739	3,205	2,720	2,245	1,774	1,432	1,176
기타	250	250	250	250	250	250	250
세전순이익	7,738	8,558	9,409	7,646	8,674	9,160	9,982
법인세비용	1,702	1,883	2,070	1,682	1,908	2,015	2,196
당기순이익	6,036	6,675	7,339	5,964	6,766	7,145	7,786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매 출 액	19,046	19,662	20,298	20,957	21,472	22,120	22,810
감가상각비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유지보수비	1,956	2,015	2,075	2,137	2,201	2,267	2,335
인건비	845	887	931	978	1,027	1,078	1,132
지급임차료	600	600	600	600	600	600	600
순이자비용	872	568	264	0	0	0	0
기타	250	250	250	250	250	250	250
세전순이익	10,523	11,342	12,178	12,992	13,394	13,925	14,493
법인세비용	2,315	2,495	2,679	2,858	2,947	3,064	3,188
당기순이익	8,208	8,847	9,499	10,134	10,447	10,861	11,305

구 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계
매 출 액	23,409	24,106	24,817	25,456	26,174	26,923	423,893
감가상각비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80,000
유지보수비	2,405	2,477	2,551	2,628	2,707	2,788	40,888
인건비	1,189	1,248	1,310	1,376	1,445	1,517	19,852
지급임차료	600	600	600	600	600	600	12,000



순이자비용	0	0	0	0	0	0	17,995
기타	250	250	250	250	250	1,050	5,800
세전순이익	14,965	15,531	16,106	16,602	17,172	16,968	247,358
법인세비용	3,292	3,417	3,543	3,652	3,778	3,733	54,417
당기순이익	11,673	12,114	12,563	12,950	13,394	13,235	192,941

\* 세전순이익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표 2-11>을 적용하여 앞 절에서는 표준 당기순이익의 17.5%에 상응하는 이익공유 방안으로 ‘초과이익의 28.4%’와 ‘매출액의 7.0%’ 기준을 제시하였음
- 이와 같이 향후 수익과 비용을 추정하고 추정된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초과이익의 일정률 또는 매출액의 일정률을 사전에 확정하여 당해 일정률을 계속 적용하는 방법은 추정한 수익·비용과 실제 수익·비용이 크게 상이할 경우 실제 당기순이익 대비 기부금액이 예상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실제 발생한 평균 매출액과 주요 평균 비용을 조정하여 표준 당기순이익을 산정하고, 표준 당기순이익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환산하기 위한 일정율을 매년 산정하여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2.3.2 실제 매출액과 발생비용 조정 방법

#### (1) 일반적인 기준

조정하는 수익과 비용

- 이 <표 2-11> 표준 추정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과 감가상각비 및 유지보수비는 실제 매출액과 발생비용을 적용하여 조정함

- 인건비, 지급임차료, 순이자비용, 기타는 실제 비용을 적용하여 조정하지 않고 <표 2-11>의 표준비용으로 함

\* 2034년 이후의 경우 인건비는 매년 3% 증가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기타는 250백만원(2034년 기타비용에서 해체비 추정액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함

□ 기부금의 비용 산입

- 개발이익 공유화에 따라 제주도에 기부하는 금액(이 절 '2.3'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기부금을 말함)은 이 <표 2-11> 표준 추정 손익계산서에서 비용(기부금) 항목을 추가하여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비용으로 봄

- 발전사업 초기에 기부금 기탁 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한 경우에도 유예된 금액은 당해 기부금을 기탁한 연도가 아니라 해당연도의 다음 연도 비용으로 봄

□ 설비용량과 기간의 조정

- 발전설비 용량이 30MW가 아닌 발전사업자의 경우 해당 실제 매출액과 발생비용 각각에 대해 30MW에서 해당 발전설비 용량을 나눈 수치를 곱한 금액으로 조정함

- 다만, 전력계통연계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발전설비 용량에 비례하지 않는 비용은 30MW에서 해당 발전설비 용량을 나눈 수치를 곱하여 조정하지 않고 해당 발생비용으로 함

- 비정상적인 고장 또는 비정기적인 수리로 인해 정상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매출액과 유지보수비는 제외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함

- 매출액 = (실제 매출액 - 해당기간 매출액) × [ 365 ÷ (365 - 해당기간 일수)]

- 유지보수비 = (실제 발생한 유지보수비 - 해당기간 유지보수비) × [ 365 ÷ (365 - 해당기간 일수)]

- 발전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의 매출액(A)과 감가상각비(B) 및 유지보수비(C)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정함

- 매출액 = A × (365 ÷ 해당기간 일수)

- 감가상각비 = B × (365 ÷ 해당기간 일수)

- 유지보수비 = C × (365 ÷ 해당기간 일수)

- 풍력발전설비 내용연수(20년으로 추정됨) 경과 등으로 풍력발전설비를 재설치하여 사업을 계속하거나 풍력발전사업을 완전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풍력발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A)과 감가상각비(B) 및 유지보수비(C)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당기간 일수(당해 사업연도 초일부터 풍력발전 종료일까지 일수)를 조정함

- 매출액 = A × (365 ÷ 해당기간 일수)

- 감가상각비 = B × (365 ÷ 해당기간 일수)

- 유지보수비 = C × (365 ÷ 해당기간 일수)

□ 평균 수익과 비용의 적용

- 가시리 풍력발전지구, 김녕 풍력발전지구, 상명 풍력발전지구, 어음 풍력발전지구 중 육상풍력발전 사업을 개시한 각 발전사업자의 해당연도 매출액 합계액과 발생비용 합계액(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기부금 각각

으로 구분)에 해당 사업자 수를 나눈 평균 매출액과 평균 발생비용 각각을 아래 <표 2-12> 평균 수익과 평균 비용의 산출을 위한 표준 손익계산서의 해당 연도 매출액,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용으로 추가 인정되는 기부금으로 함

- 3개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각각 최상과 최하인 매출액,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기부금은 위 각 사업자의 매출액 합계액과 발생비용(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기부금 각각으로 구분) 합계액에서 제외하고 평균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해당 사업자 수에서도 제외함

<표 2-12> 평균 수익과 평균 비용의 산출을 위한 표준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액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인건비	600	630	662	695	730	767	805
지급임차료	600	600	600	600	600	600	600
순이자비용	3,739	3,205	2,720	2,245	1,774	1,432	1,176
기부금	0						
기타	250	250	250	250	250	250	250
세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매출액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인건비	845	887	931	978	1,027	1,078	1,132
지급임차료	600	600	600	600	600	600	600

순이자비용	872	568	264	0	0	0	0
기부금							
기타	250	250	250	250	250	250	250
세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구 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매 출 액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인건비	1,189	1,248	1,310	1,376	1,445	1,517
지급임차료	600	600	600	600	600	600
순이자비용	0	0	0	0	0	0
기부금						
기타	250	250	250	250	250	1,050
세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 사업 부문별 손익 산정 : 별도 법인(SPC)이 아닌 사업부 형태로 풍력발전 사업을 영위할 경우 해당 풍력발전지구에서 풍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당기순이익을 산출할 때에는 사업부문간 비용배분이 이루어지는 인건비, 순이자비용, 기타의 금액은 위 <표 2-12> 평균 수익과 평균 비용의 산출을 위한 표준손익계산서에 제시된 연도별 해당 비용의 금액으로 하며(발전설비 용량 30MW 이하인 경우 각각의 비용에 '해당 발전설비 용량/30'을 곱하여 산출함),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다음 '(2)'와 '(3)'의 방법에 의해 산정함)은 해당 풍력발전지구에서 발생한 매출액,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지급임차료(발전설비 부지 임차료), 기부금(이익공유화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한 금액으로 한정함)의 금액으로 함(법인세비용은 위에 설명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해당 사업 부문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함)

## (2) 매출액 산정 방법

- 매출액은 전력판매수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가격 등 해당 육상풍력발전지구에서의 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당기에 발생한 모든 영업수익을 포함함
  -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자인 발전사업자가 풍력발전량을 당해 의무량에 포함시킴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판매되지 않은 REC에 연간 단위당 평균가격(<표 2-2> 4개 육상풍력발전지구의 발전사업자 중 REC 판매수입이 있는 사업자의 해당 연도 REC 판매수입의 합계액을 REC 판매량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을 곱한 금액을 매출액에 포함함
- 매출액의 측정과 기간귀속 등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름

## (3) 실제 발생비용 산정 방법

### □ 감가상각비

- 풍력발전지구에 위치한 발전설비 및 해당 전력계통연계 시설의 감가상각대상 금액에 대해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출함
  - 차입원가는 위 발전설비 및 전력계통연계와 관련된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함
  - 본사의 간접비 배부액 등 풍력발전지구에 위치한 풍력발전 설비 및 해당 전력계통연계 시설의 취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액은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대상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위 사항 외에 수익적지출 등 재무제표의 자산에 계상할 수 없어 감가상각대상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의 구분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름

□ 유지보수비

- 풍력발전지구에 위치한 발전설비 및 해당 전력계통연계 시설의 유지보수비(해당 설비와 시설에 대한 수익적 지출액)가 해당되며, 그 발생기간의 귀속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름

□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비용 산정

- 위 감가상각비와 유지보수비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는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규정한 시가를 적용함

### 2.3.3 매출액 기준 환산율 산정과 적용

- <표 2-12> 평균 수익과 평균 비용의 산출을 위한 표준 손익계산서에서 '2.3.2'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해당연도 매출액·감가상각비·유지보수비·기부금·법인세비용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해당 연도 표준 당기순이익의 17.5%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환산하기 위한 일정률( $x$ )은 다음과 같음

- 표준 매출액  $\times x =$  표준 당기순이익  $\times 17.5\%$

\* 위 일정률( $x$ )은 소숫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함(예 0.0684  $\rightarrow$  6.8%)

- 해당 연도 기부금 산출

- 기부금 = 해당 발전사업자의 당기 매출액\*  $\times x$

\* '2.3.2 (2)'의 매출액 산정 방법에 따른 매출액으로 하며, '2.3.2 (1)'의 설비용량과 기간의 조정을 하지 않은 것임

- 기부금 면제

- 해당 풍력발전사업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연도의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함

- 풍력발전사업자인 법인이 <표 2-2> 4개 육상풍력발전지구에서의 풍력발전사업 외에 다른 사업도 영위할 경우 해당 육상풍력발전지구에서 영위하는 풍력발전사업의 당기순이익은 <표 2-12>의 평균 수익과 평균 비용의 산출을 위한 표준 손익계산서에서 '2.3.2 실제 매출액과 발생비용 조정 방법'(단, '□ 평균 수익과 비용의 적용'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산정된 해당 풍력발전사업에서의 수익과 비용을 적용하여 산출함

※ '2.3.2'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발전사업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며,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의뢰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의견에 따름



### Ⅲ. 이익공유화 계획 이행담보 방안

#### 3.1 풍력발전 사업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

##### 3.1.1 풍력발전의 공공성

○ 풍력자원이 공공자원 인지 여부

- 헌법 제120조 제1항에 의하면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풍력의 개발가치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풍력은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풍력은 헌법 제120조상의 공공자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풍력발전은 곧 전기사업인바, 전기사업도 공익사업이라 할 것이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전기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판단하면서 어떤 사업이 공익사업인가의 여부는 사업주체의 여하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며 그 사업 자체의 성질에 의하여 정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1970.9.22. 70누81판결]

가.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업무인 전기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동 회사의 수력발전을 위한 하천의 점유 또는 사용은 하천법 제30조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한 하천의 점유 또는 사용”에 해당한다.

나. 어떤 사업이 공익사업인가의 여부는 그 사업 자체의 성질에 의하여 정할 것이고 사업주체의 여하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다.

- 따라서 헌법 제120조에 의거 풍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이용을 특허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주풍

력은 그 개발·이용을 특허할 수 있으며, 전기사업이 사업주체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사업자체의 성질상 공익사업이므로 제주풍력발전은 그 자체로 공공성을 띤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3.1.2 특허

- 특허란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강학상의 용어이며 실정법상으로는 면허·허가 등으로 불림
- 판례상으로는 공유수면매립면허,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 등이 특허로 인정되고 있음
- 이러한 특허를 판례 및 통설에 따르면 재량행위로 보고 있음

### 3.1.3 재량행위인지 여부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행정의 자유와 구속이 다르게 되는데, 기속행위는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말아야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 반면, 재량행위는 법규상 전제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는 법 효과를 다수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행정청의 재량행위는 재량권이 주어진 목적과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바, 재량권의 남용과 재량의 하자의 판단기준은 그 위법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음

#### 3.1.4 소결

- 풍력의 개발과 이용은 특허할 수 있으며 전기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할 때 제주풍력발전사업 허가는 특허이자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3.2 사업허가 시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지 여부

### 3.2.1 원칙

- 사업허가를 하면서 사업자에게 초과이익의 일부를 공유하게 하는 것은 행정법상 부관에 해당하며 부관 중에서도 부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부담이란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관으로서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무를 명하는 것임
  - 판례는 이러한 부관을 재량행위에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붙일 수 없다고 함
- 판례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시행 인가에 대하여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하지 않은 조건(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의 인가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처분청으로서의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음
- 따라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사업허가를 함에 있어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원(공유)하게 하는 것은 재량행위인 제주풍력발전의 허가에 부관을 붙이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됨

### 3.2.2 부관의 제한

- 부관에는 부당결부금지원칙이라는 제한이 있음
  -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으로 정의됨

- 그 적용요건으로 행정작용과 사인의 급부 사이에 인과관계(부관의 부가가 필요하게 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정작용의 근거법률의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임
- 사업허가의 근거 법규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기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이 공공자원으로서의 풍력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므로 민간사업자가 획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제주도에 환원하게 하는 것은 근거법률의 목적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관의 부가가 필요한 관계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대법원 판례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본 사례가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음(대법원 2009.12.10.선고 2007다63966판결)

### 3.2.3 사후 부관

-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사후에 부관을 붙이는 사후부관은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사후부관의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및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상 사후부관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임
-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사후부관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음

### 3.2.4 소결

- 결론적으로 제주풍력발전사업허가를 함에 있어 그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원하게 하는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급부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판례는 재량행위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부담을 붙일 수 있다는 입장임
- 따라서 재량행위이자 수익적 행정행위인 제주풍력발전 사업허가에 이익 공유 형태의 부담을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함
  - 다만,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풍력발전사업 허가라는 행정처분과 이익공유라는 부담 간에 실체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실체적 관련성은 법치주의, 사유재산 존중,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만 적법한데 풍력발전의 이익공유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3.3 이행담보 방안

#### 3.3.1 행정행위의 철회

- 부담의 불이행은 행정 강제의 사유가 되기도 하고, 행정행위의 철회의 사유가 되기도 함(대판 1989.10.24. 89누2431)
  - 따라서 풍력발전사업허가가 있는 후 이익공유방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부담의 불이행으로 보아 허가의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철회는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유에 의해 그 행위의 효력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원행정행위와 독립된 별개의 의사표시”를 말함
- 부담 자체가 위법하더라도 유효한 행위로서 존재하는 한 철회의 사유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철회는 부담을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이 사전에 충분히 주어졌음을 전제로 함
- 따라서 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이익공유를 부담으로 하여 사업허가를 받았는데 이익공유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의 불이행으로 허가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3.3.2 이익공유 계약 체결

- 판례에 따르면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였음(대판 2009.2.12. 2005다65500)
- 제주풍력발전사업허가 자체는 당연히 행정행위이나 판례에 따르면 이익공유 조건 등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의 형식으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그 협약은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공법상 계약이든 사법상 계약이든 계약인 이상 계약당사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의무를 지는 바,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음
- 다만, 당사자는 원 행정행위와 별도로 부담의 위법성만을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위법하다면 부담 자체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협약도 무효가 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이익공유화 계획 불이행으로 인한 허가 취소 시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부제소 특약'을 할 필요가 있음

### 3.3.3 단계별 이행담보 방안

- **이익공유화 계획 심의 시** :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의 부대조건인 합동개발방식(제주에너지공사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기업 등이 일정 지분 참여)의 대안으로 자발적으로 기부금 약정을 한다는 사실을 사업예정자로 부터 확인함
- **사업 허가 시** : 이익공유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부가함
- **세부 협약서** : 위 합동개발방식의 대안으로 자발적으로 기부금 약정을 한다는 사실과 이익공유화 계획 불이행으로 인한 허가 취소 시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부제소 특약을 함



### 부록 3: 육상풍력발전사업에 관한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현행 기본)

## ××육상풍력발전사업에 관한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와 ××풍력발전회사(이하 “회사”)는 제주의 풍력자원이 공공자원이며, 제주의 풍력발전사업이 공익사업임을 상호 깊이 인식하여 이를 전제로 ××육상풍력발전사업에 관한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제주의 풍력자원의 지속적인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도는 회사가 제주풍력발전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회사가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향후 풍력발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제주도가 일정 부분을 공유할 수 있음을 합의하고 이에 따른 상호간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 본 약정은 제주도가 회사에게 풍력발전 사업허가와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한 ××풍력발전지구에서의 육상풍력 발전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약정기간)** 본 약정의 효력은 약정체결일로부터 회사가 제주도로부터 풍력발전 사업허가와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제주풍력 발전사업의 종료 시점까지로 한다.

**제4조(이익공유 내용)** ① 회사는 매년 ××육상풍력발전사업에서 발생한 당기 매출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공유화를 목적으로 제주도에 다음 연도에 자발적으로 기부한다.

② 3년을 주기로 하여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연도별 기부금액과 첨부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보고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해당 연도의 표준당기순이익의 17.5%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환산하기 위한 일정률에 회사가 ××육상풍력발전사업에서 발생한 당기 매출액을 곱한 금액(이하 “A” 라 한다)을 비교하여 A로 조정한다.

③ 회사가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의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부문의 경우: 첨부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보고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결과 ××지구 육상풍력발전사업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의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해당 회계연도 ××지구 육상풍력발전사업 부문의 손익계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와 제주도가 요청하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기부금을 각 회계연도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주도에 기부한다. 단, 제2항에 따라 조정하는 연도에 제주도에 기부할 금액(3차 연도의 A)보다 1차 연도와 2차 연도에 대한 기부금 조정으로 인해 공제해야 할 금액이 클 경우에는 그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그 이후 연도에 기부하는 금액에서 공제한다.

⑤ 제2항의 경우 매출액,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대상 금액의 확인을 위하여 제주도가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사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이익공유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3-30호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의 지구 지정의 부대조건인 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의 대안으로 회사와 회사의 주주가 선택한 것임을 상호 확인한다.

**제5조(이행보증보험증서 제출)** ① 제주도는 회사에게 제4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예상 기부금액에 대하여 3년 단위로 제주도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증서를 제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해서 당해 계약 체결 전에 제주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주도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주도와 회사간 사전 합의한 예상기부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서를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의한 이행보증보험료는 제4조제5항의 기부금액에 포함시킨다.

**제6조(약정의 변경·해지·준수의무)** ① 본 약정 기간 중 영업환경의 변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익공유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

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향후 제2조의 풍력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본 약정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상호 합의 후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제4조의 이익공유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주도는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약정의 해지 및 제2조의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제주도가 제2조의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취소한 경우 회사와 회사의 주주는 이와 관련하여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민·형사 및 행정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 ⑤ 본 약정의 해지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도달하였을 때 발생한다.

#### 제7조(비밀의 준수) (생략)

#### 제8조(양도 금지) (생략)

**제9조(협의를 및 분쟁)** ①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약정서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 ② 본 약정과 관련된 분쟁의 개시일로부터 최종 해결 시까지 양 당사자는 성실하게 약정 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관할법원) (생략)

부록 4: 해상풍력발전사업에 관한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표준 안)

××해상풍력발전사업에 관한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와 ××풍력발전회사(이하 “회사”)는 제주의 풍력자원이 공공자원이며, 제주의 풍력발전사업이 공익사업임을 상호 깊이 인식하여 이를 전제로 ××해상풍력발전사업에 관한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제주의 풍력자원의 지속적인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도는 회사가 제주풍력발전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회사가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향후 풍력 발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제주도가 일정 부분을 공유할 수 있음을 합의하고 이에 따른 상호간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 본 약정은 제주도가 회사에게 풍력발전 사업허가와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한 ××풍력발전지구에서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약정기간)** 본 약정의 효력은 약정체결일로부터 회사가 제주도로부터 풍력 발전 사업허가와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제주풍력 발전사업의 종료 시점까지로 한다.

**제4조(이익공유 내용)** ① 회사는 매년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초과이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이익공유화를 목적으로 각 회계연도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주도에 자발적으로 기부한다.

② 회사가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회계연도의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회사는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기부금 산출내역을 제주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부금 산출내역의 확인을 위하여 제주도가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제5조(약정의 변경·해지·준수의무)** ① 본 약정 기간 중 영업환경의 변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익공유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향후 제2조의 풍력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본 약정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상호 합의 후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제4조의 이익공유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주도는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약정의 해지 및 제2조의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제주도가 제2조의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취소한 경우 회사와 회사의 주주는 이와 관련하여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민·형사 및 행정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 ⑤ 본 약정의 해지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도달하였을 때 발생한다.

**제6조(비밀의 준수) (생략)**

**제7조(양도 금지) (생략)**

- 제8조(협의 및 분쟁)** ①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약정서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 ② 본 약정과 관련된 분쟁의 개시일로부터 최종 해결 시까지 양 당사자는 성실하게 약정 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관할법원) (생략)**

**[별표 1] 초과이익 산정 방법**

- **초과이익** = 세후 영업이익 - 정상이익
- **세후 영업이익** = 영업이익(해당연도 매출액기준 기부금은 영업비용에 포함함) × (1 - 법인세율)
- **법인세율** = 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단, 법인세비용이 음수인 경우 0)

- 정상이익 = (차입금 + 납입자본금 + 이익유보금)×5%
  - 차입금, 납입자본금: 해당연도 가중평균 잔액
  - 이익유보금: 당기순이익×20% 누적금액(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기순손실×20% 차감)
- \* 초과이익이 0이하일 경우 0으로 함